

퇴직한 다음 날 궁금한

50
가지

퇴직을 앞둔 직장인의 노후준비 길라잡이

국내 대표지수 투자, 결국은 TIGER ETF



TIGER 200 ETF 102110

TIGER 코스닥150 ETF 232080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자격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 거래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TIGER 200 ETF 합성총보수 연 0.07%(운용: 0.029%, 판매: 0.001%, 신탁: 0.01%, 사무: 0.01%, 기타비용: 0.02%), 직전 회계년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187% 발생,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TIGER 코스닥150 ETF 합성총보수 연 0.22%(운용: 0.149%, 판매: 0.001%, 신탁: 0.02%, 사무: 0.02%, 기타비용: 0.03%), 직전 회계년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499% 발생,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1132호(2026.03.18~2028.03.13)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C O N T E N T S

06 퇴직한 다음 날 궁금한
50가지

PART 1 퇴직급여

10 **01 퇴직급여 산정**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4 **02 수령 시기와 방법**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8 **03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22 **04 퇴직소득 합산 특례**
중간정산 했으면
퇴직소득세 더 내나요?

28 **05 공무원 퇴직수당**
공무원 퇴직수당에도
퇴직소득세 부과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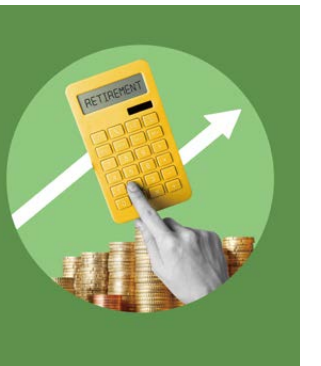
34 **06 임원 퇴직소득 한도**
임원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8 **07 연금수령 시 혜택**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42 **08 연금수령 계좌**
퇴직급여, 연금저축과
IRP중 어디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46 **09 연금수령 방법**
내게 맞는 연금수령 방법은
무엇일까요?

50 **10 연금수령한도**
한 해에 연금을 얼마까지
찾아낼 수 있나요?



54 **11 연금소득세**
퇴직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58 **12 실물 이전**
DC형에서 가입종인 금융
상품을 IRP로 이전할 수
있나요?

62 **13 연금계좌 중도 인출**
퇴직급여를 중도에
인출할 수 있나요?

66 **14 연금계좌 통합**
여러회사 퇴직금을
모아서 연금수령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70 **15 명예퇴직금**
명예퇴직금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 내나요?



PART 2 개인연금

- 76 **16 (구)개인연금**
오래된 연금, 해지하면 안 되나요?
- 80 **17 연금계좌 과세**
연금수령 시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84 **18 연금 인출 시 투자**
연금 받으면서도 투자할 수 있나요?
- 88 **19 상품 매도 순서**
연금수령 시 금융상품은 어떤 순서로 매도하나요?
- 92 **20 ETF 절세**
월배당 ETF를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96 **21 재직 중 연금 개시**
일하면서 연금받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 98 **22 절세 혜택**
연금보험 가입자는 어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02 **23 연금보험**
중신·확정·상속형 연금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PART 3 국민연금

- 108 **24 연금보험료**
퇴직 후 소득 없어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 112 **25 임의가입**
무소득 배우자가 노령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16 **26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연금 더 받나요?
- 120 **27 추후 납부**
과거에 안 낸 보험료를 지금 낼 수 있나요?
- 124 **28 군복무기간 추후 납부**
군복무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나요?



- 128 **29 급여 종류**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132 **30 노령연금**
노령연금, 언제 어떻게 받나요?
- 136 **31 조기노령연금**
소득이 없으면 노령연금 당겨 받을 수 있나요?
- 140 **32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소득이 많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되나요?
- 144 **33 연기연금**
노령연금 늦게 받으면 득일까요, 실일까요?
- 148 **34 연금소득세**
노령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152 **35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내나요??



PART 4 국민건강보험

- 158 **36 가입 자격**
퇴직하면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 162 **37 개인사업자**
재취업하거나 개인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 166 **38 지역가입자 보험료**
이자·배당·전월세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되나요?
- 168 **39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 172 **40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 176 **41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재산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 180 **42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으로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나요?
- 184 **43 보험료 조정**
소득·재산 변동 시 건강보험료 조정되나요?



PART 5 실업급여

- 188 **44 수급자격**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192 **45 구직급여 신청**
구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96 **46 구직급여 수령**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200 **47 구직급여 연장**
재취업 안 되면 구직급여 수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204 **48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에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는 못 받나요?
- 208 **49 취업촉진수당**
재취업 활동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12 **50 실업 크레딧**
구직급여 받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16 **SURVEY**

퇴직한 다음 날 궁금한 50가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왔던 노후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면 누구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된다.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라 답답한 것도 사실이다.

퇴직에 임박한 근로자들은 실제로 무엇을 가장 궁금해할까?

건강과 여가와 같은 비재무적인 분야에서도 궁금한 것이 많겠지만,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는 재무 분야에 집중하여, 크게 5가지 영역의 50가지 세부 질문으로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영역은 퇴직급여다. 퇴직자가 손에 쥘 금융자산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 퇴직급여다. 퇴직급여는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그리고 퇴직급여를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연금수령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기로 하자.

두 번째 영역에서는 개인연금을 다룬다. 먼저 개인연금 상품 종류부터 살펴보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등 개인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들여다보기로 하자. 아무래도 퇴직자 입장에서 연금 개시 시기와 연금수령 방법에 관심이 갈 것이다. 관련 내용들도 점검해 본다.

은퇴자의 주요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세 번째 영역에서 살펴본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고, 연금은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개시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면 득일까, 실일까? 그리고 반환일시금 반납, 추후 납부, 임의가입 등을 활용해 연금을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퇴직자 입장에서 지출 관리 또한 중요하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나가는 지출을 비소비지출이라 하는데, 퇴직자가 비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료다. 그래서 네 번째 영역에서는 퇴직 이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역에서는 실업급여를 다룬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어느 정도 금액을 어느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에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5가지 영역, 50가지 질문을 차근차근 읽어도 되고, 궁금한 내용만 골라서 읽어도 좋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향해를 시작해 보자.



1

PART
퇴직급여

알려두기

- * 본 책의 내용은 2026년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본 책의 소득세율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퇴직연금 미가입자와 DB형 가입 근로자는 '퇴직 이전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에 '계속근로 기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 ☑ 회사는 DC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되는 부담금'을 이체해야 하고, DC형 가입자는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수령합니다.

CHECK 1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급여 수령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는 무관하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 직원이든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CHECK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내 퇴직급여는 얼마나 될까?’ 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가장 궁금한 질문일 것이다. 퇴직급여 산정 방법은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산출해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계좌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되는 부담금을 입금해야 한다. 근로자는 개인퇴직계좌에 입금된 부담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할 때 회사가 납부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전부 퇴직급여로 수령한다.

CHECK 3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출하나?

그러면 지금부터 퇴직금제도 아래서 일하는 근로자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 산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퇴직연금 미가입자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산출하려면 ‘평균임금’을 알아야 한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다. 홍길동 씨를 예로 들어보자. 홍길동 씨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올해 12월 31일에 퇴직 예정이다. 홍길동 씨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받을 임금을 전부 합치면 총 1,840만 원이다. 퇴직 이전 3개월(10월~12월) 동안 총 일수는 92일이다. 1,84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2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홍길동 씨의 평균임금이다. 따라서 30일분 평균임금은 600만 원이 된다.

퇴직급여 종류와 퇴직급여 수령액

퇴직급여 종류		퇴직급여 수령액
퇴직금		퇴직 이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퇴직 이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확정기여형(DC형)	회사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운용수익

CHECK 4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상여금도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하지만 특정 부서와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연차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과 연차 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먼저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수령한 상여금과 연차 수당을 전부 합친 다음 4로 나눈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을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과 합치고,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나누면 된다.

앞서 예로 든 홍길동 씨가 퇴직 이전 1년

동안 상여금으로 1,840만 원, 연차수당으로 368만 원을 수령했다고 해보자. 이 둘을 더한 다음 4로 나누면 552만 원이다. 여기에 홍길동 씨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1,840만 원을 더하면 2,392만 원이다. 이 금액을 퇴직 이전 3개월간 총 일수(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은 26만 원이 나온다. 따라서 상여금을 포함한 30일분 평균임금은 780만 원이다.

CHECK 5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통상 '계속근로기간'이라 하면 입사한 날부터 퇴직할 날까지를 말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무 중 질병이나 가사 문제로 휴직했다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이 밖에 수습 기간, 사업장 휴직 기간,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

간에 포함된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개인적 사유로 휴직한 기간을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있다.

과거에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중간 정산을 한 다음 날부터 퇴직할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 그렇다면 마지막 중간 정산을 받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직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

라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홍길동 씨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30년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금 중간 정산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홍길동 씨는 법정퇴직급여로 2억 3,4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

홍길동 씨의 예상 퇴직급여

홍길동 씨는 올해 12월 31일에 퇴직할 예정이다. 현재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과거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적은 없다. 퇴직급여 산정에 필요한 사항과 예상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다.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1,840만 원

퇴직 이전 1년간 수령한 상여금

1,840만 원

퇴직 이전 1년간 수령한 연차 수당

368만 원

계속근로기간

30년

예상 퇴직급여

*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 (직전 1년 상여금과 연차 수당) ÷ 4} ÷ 3개월간 총 일수
 = {1,840만 원 + (1,840만 원 + 368만 원) ÷ 4} ÷ 92일
 = {1,840만 원 + 552만 원} ÷ 92일
 = 26만 원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780만 원**** × 30년

= **2억 3,400만 원**

** **30일분 평균임금**

26만 원 × 30일 = 780만 원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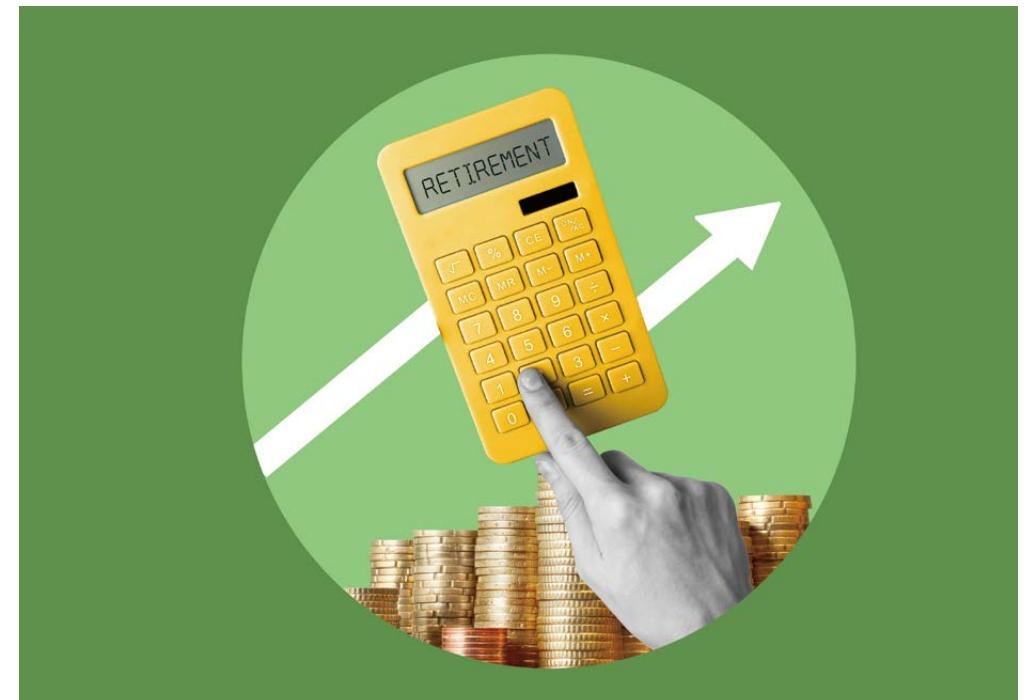
-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55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로 수령해야 합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CHECK 1 퇴직하자마자 받을 수 있나?

먼저 퇴직급여 수령 시기부터 살펴보자. 퇴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자는 사용자에게 지연 이자(2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퇴직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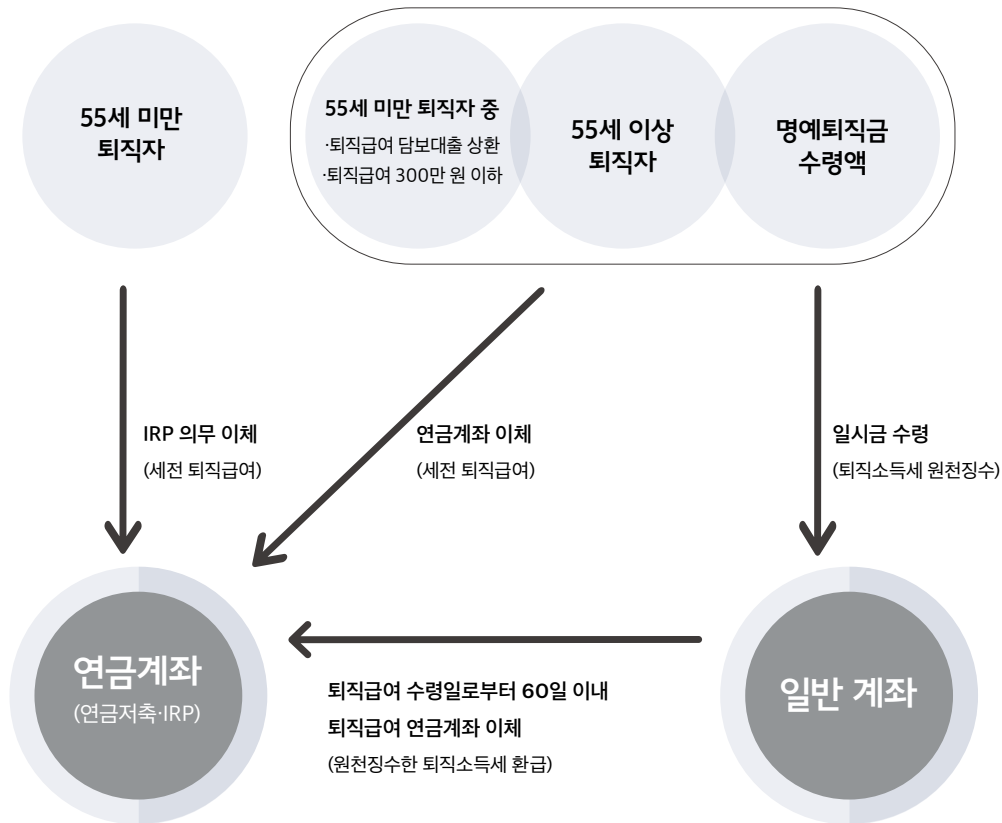
CHECK 2 법정퇴직급여는 어떻게 수령해야 하나?

이번에는 퇴직급여 수령 방법을 살펴보자. 퇴직급여는 그 성격에 따라 법정퇴직급여와 법정외퇴직급여(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 등)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법정퇴직급여부터 살펴보자. 55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법정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다만 퇴직금 담보



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할 수도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는 퇴직소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데, 이렇게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이연 퇴직소득'이라 한다. 세금은 연금계좌에서 이연 퇴직소득을 인출할 때 부과하는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부담을 30~50%가량 덜 수 있다.



CHECK 3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수령해야 하나?

이번에는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에 대해 살펴보자.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일까, 퇴직소득일까?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에 상관없이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다. 명예퇴직금도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받는 급여이므로 퇴직소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명예퇴직금은 법정퇴직급여는 아니기 때문에 55세 전에 퇴직하더라도 IRP에 이체해야 할 의무는 없다.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정퇴직금은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명예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하나의 계좌에 수령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할 수도 있다.

CHECK 4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다시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퇴직급여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이체를 완료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일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다시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해당 연금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일시 수령한 퇴직급여 중 일부만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전체 퇴직금에서 이체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로 환급받는다. 85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 규모가 클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 동일한 퇴직급여를 받아도 근속연수가 긴 퇴직자가 퇴직소득세를 적게 냅니다.

CHECK 1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사용자의 부담으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소득으로 정의하고,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밖에 2012년 이전에 근로자들이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소득(세액) 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금액도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 성과급 중 일부를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금액과 운용수익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세스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현행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6~10년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11~20년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공제	
소득 금액	공제율
800만 원 이하	100%
7천만 원 이하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7천만 원 초과분의 55%)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 퇴직급여	= 환산급여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환산 배수(12)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소득세율
= 환산 산출 세액	
× 근속연수	× 환산 배수(12)
÷ 환산 배수(12)	= 퇴직소득세



CHECK 2 퇴직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하나?


그렇지는 않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다. 이 같은 특성을 무시하고 퇴직소득을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면 그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분류과세 한다.

하지만 분류과세를 한다고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규모가 커지는데, 여기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하면 장기근속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 ‘연분연승’ 방법을 적용한다. 먼저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다. 이렇게 퇴직소득을 ‘연분’하면 과세표준이 작아져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데, 이를 ‘연승’이라 한다.

퇴직소득은 노후 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 각종 공제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근속연수공제가 대표적이고, 퇴직급여의 크기에 따라 환산급여공제도 적용하고 있다.

CHECK 3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

퇴직소득세를 좌우하는 것은 퇴직소득의 크기와 근속연수다. 퇴직소득이 많을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아래 표에서 가로축은 근속연수를, 세로축은 퇴직소득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똑같이 퇴직급여로 3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30년이면 1,085만 원, 20년이면 1,984만 원, 10년이면 4,289만 원, 5년이면 6,39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통상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말한다. 해당기간 일수를 365(일)로 나눈 다음 소수점은 이하 숫자는 올림해서 근속연수를 산출한다. 재직 기간 중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중도 인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중간 정산(중도 인출)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일수를 가지고 근속연수로 산출한다. 

퇴직소득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구분	근속연수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5천만 원	236만 원	75만 원	33만 원	-	-	-	-
1억 원	1,036만 원	426만 원	239만 원	123만 원	75만 원	26만 원	-
2억 원	3,571만 원	1,966만 원	1,16만 원	773만 원	558만 원	380만 원	242만 원
3억 원	6,392만 원	4,289만 원	2,844만 원	1,984만 원	1,361만 원	1,085만 원	870만 원
4억 원	9,316만 원	7,006만 원	4,961만 원	3,721만 원	2,771만 원	2,105만 원	1,651만 원
5억 원	1억 2,319만 원	9,781만 원	7,656만 원	5,838만 원	4,545만 원	3,557만 원	2,892만 원
10억 원	2억 8,029만 원	2억 4,487만 원	2억 1,678만 원	1억 9,276만 원	1억 7,039만 원	1억 4,904만 원	1억 2,770만 원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2026년 퇴직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작성함(지방소득세 포함).

중간정산 했으면 퇴직소득세 더 내나요?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면,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를 산출합니다.
- 중간정산으로 인해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 세액정산 제도를 활용하면 중간정산 전후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CHECK 1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소득세를 더 내나요?

퇴직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퇴직소득 크기가 클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 둘째,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 퇴직소득이 같아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금을 더 낸다는 얘기다. 연분연승 방법으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A, B, C, D 네 사람이 퇴직급여로 3억 원을 받았다고 해보자. A의 근속연수는 5년이고, B는 10년, C는 20년, D는 30년이다. 이 경우 A는 6,392만 원, B는 4,289만 원, C는 1,984만 원, D는 1,085만 원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속연수가 5년인 A

는 퇴직급여 수령액의 21.3%를 퇴직소득세로 부담하는 데 반해, D는 퇴직급여의 3.6%만 퇴직소득세로 납부한다.

CHECK 2 중간 정산하면 근속연수가 짧아 지나?

통상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말한다. 하지만 재직 기간 중에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중도 인출)한 경험이 있으면, 마지막 중간 정산(중도 인출)을 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 일수를 가지고 근속연수를 산출한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중도 인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중간 정산(중도 인출) 이후 짧은 기간 일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율)

구분	근로자 A	근로자 B	근로자 C	근로자 D
퇴직급여	3억 원	3억 원	3억 원	3억 원
근속연수	5년	10년	20년	30년
퇴직소득세	6,392만 원	4,289만 원	1,984만 원	1,085만 원
퇴직소득세율	21.3%	14.3%	6.6%	3.6%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함(지방소득세 포함)



하고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CHECK 3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간 정산(중도 인출)을 한 적이 있다고 퇴직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면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제도란 과거 중간 정산(중도 인출)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와 실제 직장에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급여를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퇴직급여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도 합산한다. 그리고 퇴직하는 해의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

를 산출한 다음 중간 정산 때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는 공제해 준다.

CHECK 4 계열사로 진출한 경우에도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활용할 수 있나?

통상 퇴직급여 중간 정산(중도 인출)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일반 근로자가 임원으로 발탁되면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하는 때도 있고, 회사가 합병되거나 분할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퇴직급여를 수령하기도 한다. 그리고 계열사로 진출 가면서 기존에 일하던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일도 있다. 이때도 퇴직소득 세액정산 제도를 활용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

CHECK 5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려면 과거에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퇴직자 중 상당수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하는 회사 인사 부서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면 된다. 회사와 금융회사에서도 증빙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지방 지방 세무서에서 과거 납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중간 정산(중도 인출)을 한 적이 있다고 퇴직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면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CASE STUDY

퇴직소득 세액정산 제도를 활용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1993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33년을 한 회사에서 일해 온 김유신 씨는 2025년 연말에 명예퇴직하면서 명예퇴직금으로 3억 원, 법정퇴직금으로 4천만 원을 수령했다. 김 씨는 2015년 연말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1억6천만 원을 수령하고 퇴직소득세로 492만 원(지방소득세 49만 원 별도)을 납부했다.

김유신 씨의 퇴직소득 관련 자료

2015년 퇴직금 중간 정산했을 때

- 입사한 날: 1993년 1월 1일
- 중간 정산일: 2015년 12월 31일
- 중간 정산 퇴직금: 1억 6천만 원
- 중간 정산 당시 납부한 세금:
퇴직소득세 492만 원, 지방소득세 49만 원

2025년 최종 퇴직했을 때

- 퇴직한 날짜: 2025년 12월 31일
- 법정퇴직금: 4천만 원
- 명예퇴직금: 3억 원

그러면 김유신 씨는 2025년 연말에 퇴직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냈을까? 먼저 퇴직소득 세액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부터 살펴보자. 이 경우 김 씨의 근속연수는 10년이고 퇴직급여는 3억 4천만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김 씨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5,376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는 김유신 씨가 퇴직소득 세액 정산을 신청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중간 정산한 퇴직급여와 최종 퇴직급여를 합치면 5억 원이고, 중간 정산 전후 근속연수를 합치면 33년이다. 이를 기준으로 기납부 세액을 제외할 때, 김 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2,617만 원이다. 김 씨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세액 정산을 활용하면 2,759만 원이나 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김유신 씨의 퇴직소득 합산 특례 적용 전후 세 부담 비교

구분	합산 특례 미적용	합산 특례 적용
퇴직급여	3억 4천만 원	5억 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7,900만 원
=	3억 2,500만 원	4억 2,100만 원
× 환산 배수	12배	12배
÷ 근속연수	10년	33년
= 환산급여	3억 9천만 원	1억 5,309만 원
- 환산급여공제	1억 8,320만 원	8,559만 원
= 과세표준	2억 680만 원	6,750만 원
× 소득세율	(6~45%)	(6~45%)
= 환산 산출 세액	5,864만 원	1,044만 원
× 근속연수	10년	33년
÷ 환산 배수	12배	12배
= 산출 세액	4,887만 원	2,871만 원
- 기납부 세액	-	492만 원
= 퇴직소득세	4,887만 원	2,379만 원
+ 지방소득세	489만 원	238만 원
= 최종 납부 세액	5,376만 원	2,617만 원

공무원 퇴직수당에도 퇴직소득세 부과되나요?

- 공무원이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 (명예)퇴직수당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CHECK 1 공무원도 퇴직금을 받나?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퇴직금을 받을까?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퇴직금과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시금 형태로 된 퇴직수당을 받는다. 「공무원연금법」은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마찬가지다.

CHECK 2 퇴직수당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나?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는 퇴직수당에도 퇴직소득세를 부과할까? 그렇다. 하지만 퇴직수당 전체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2002년 이후 근무 기간에서 발생한 퇴직수당에만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왜냐하면 공적 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퇴직수당은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대상 퇴직수당은 어떻게 산출할까? 먼저 공무원연금 총 기여금

A 씨의 과세 대상 퇴직수당과 퇴직소득세

임용 일자	퇴직 일자	총 기여금 납입 월수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 월수
1993년 3월 1일	2025년 6월 30일	32년 4개월(388개월)	23년 6개월(282개월)

퇴직수당 중 과세 대상

$$= \text{퇴직수당} \times \frac{\text{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 월수}}{\text{총 기여금 납입 월수}} = 8\text{천만 원} \times \frac{282\text{개월}}{388\text{개월}} = 5,814\text{만 원}$$

납입 월수에서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 월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여기에 퇴직할 때 받은 퇴직수당을 곱해 나온 금액이 과세 대상 퇴직수당이다. 예를 들어보자. A 씨는 1993년 3월 1일에 공무원에 임용되었고, 2025년 6월 30일에 퇴직하면서 퇴직수당으로 8천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32년 4개월(388개월) 동안 기여금을 납입했고, 이 중 2002년 이후 기여금을 납입한 기간은 23년 6개월(282개월)이다. 따라서 A 씨가 받은 퇴직수당 8천만 원 중 5,814만 원(=8천만 원×282개월/388개월)만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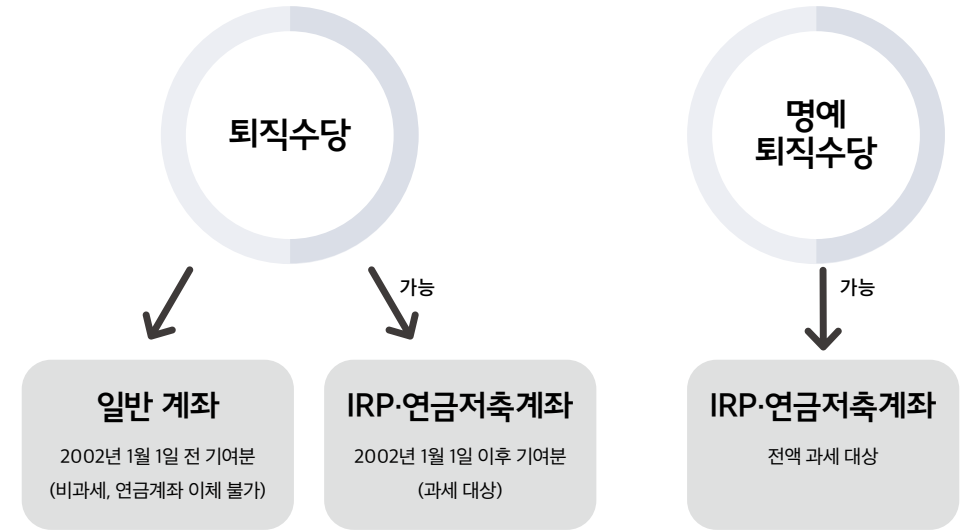
퇴직수당이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과세 대상 소득보다 근속연수공제가 더 크기 때문이다. 앞서 A 씨만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33년이므로 7,9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과세 대상 소득(5,320만 원)은 이보다 적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

CHECK 3 정년보다 빨리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나?

공무원들 중에도 명예퇴직하는 이들이 있다. 이때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 기간	산정 기준
1년 이상~5년 이내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 월수
5년 초과~10년 이내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60 + \frac{\text{정년 잔여 월수} - 60}{2})$
10년 초과	잔여 퇴직 기간이 10년인 사람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는 것을 말한다.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은 퇴직 당시 급여와 정년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해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5년 안되는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면 퇴직 당시 받던 월 급여액의 절반에 정년까지 남은 잔여 월수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수령하게 된다. 명예퇴직수당은 전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CHECK 4 (명예)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

직장인들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받는 (명예) 퇴직수당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명예퇴직수당은 전부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고, 퇴직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만 이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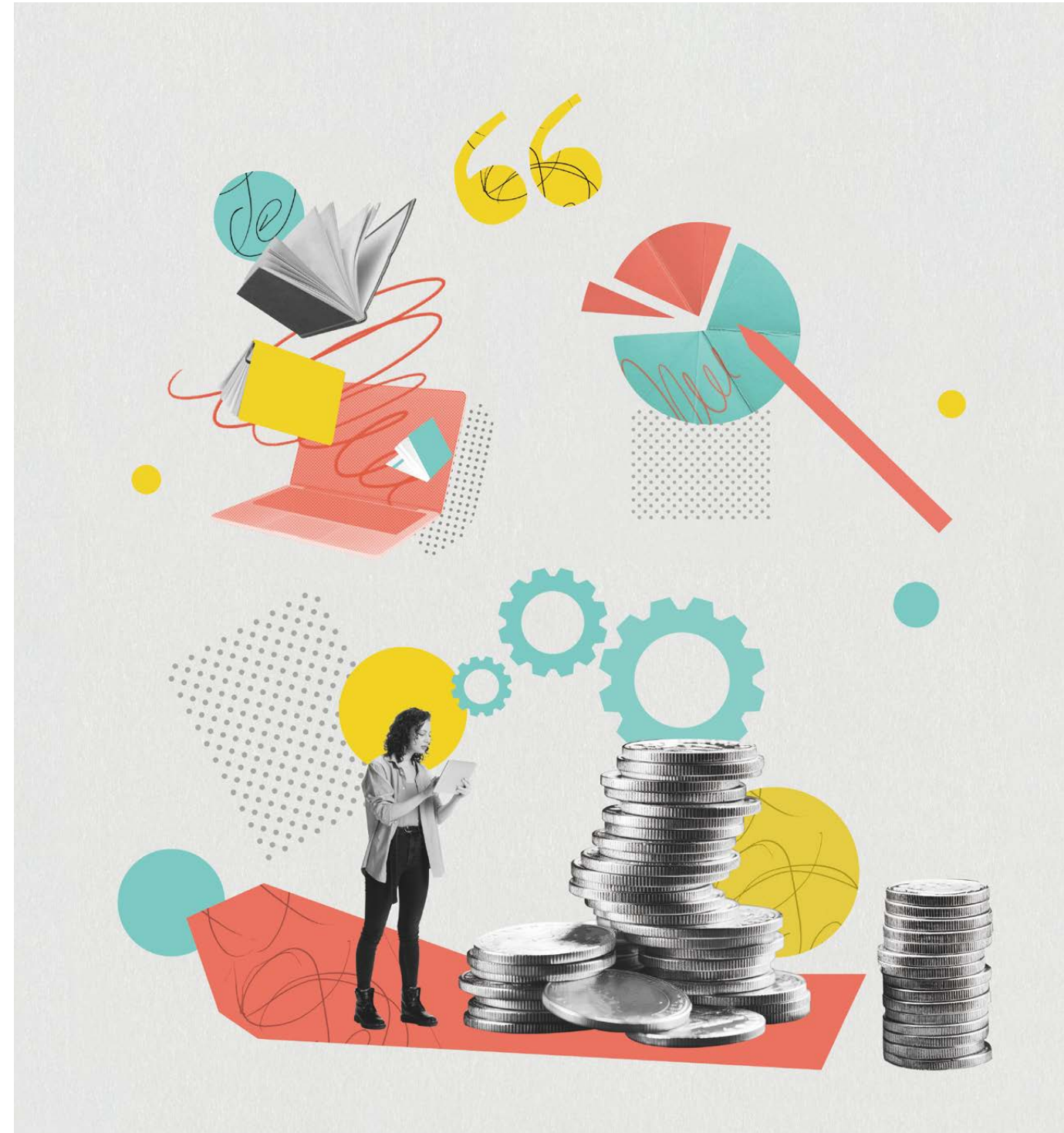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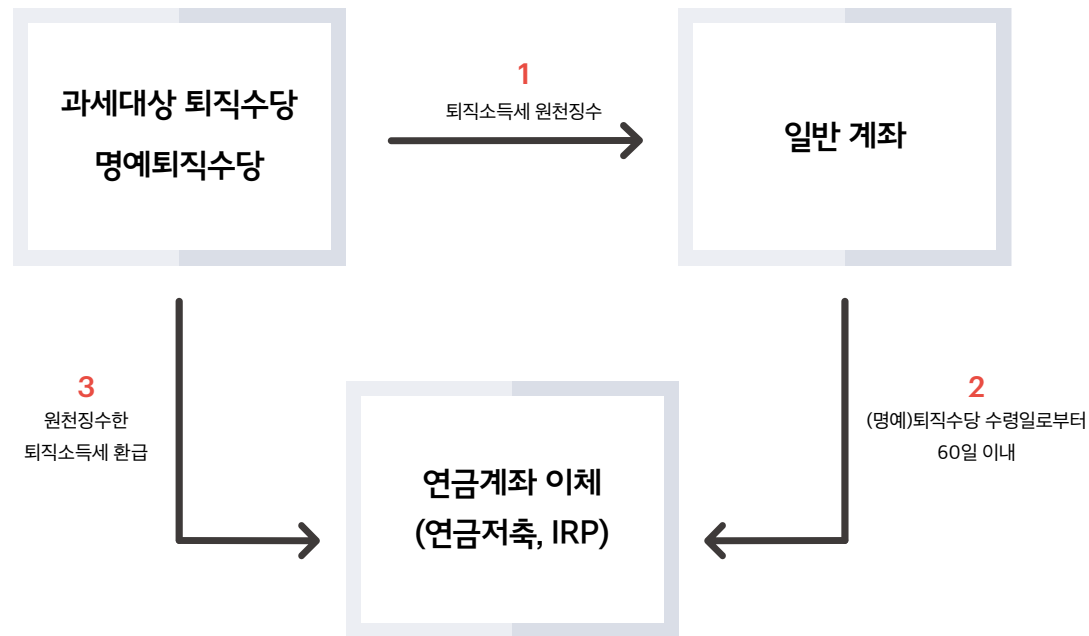
퇴직수당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인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바로 이체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퇴직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는데, 이때 퇴직소득세가 있으면 원천징수한다. 일시금으로 수령

한 (명예)퇴직수당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그러면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CHECK 5 (명예)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 가지 혜택이 있다. 첫째,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수당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자체가 많지 않아서 절세 효과가 크지는 않다. 둘째, 운용 수익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일반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15.4%의 세율로 과세하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이보다 낮은 세율(3.3~5.5%)로 과세한다. 셋째, 퇴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

(명예)퇴직수당의 연금계좌 이체



임원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임원은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세법이 정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CHECK 1 임원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회사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얼마나 줄 수 있을까? 법인세법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회사가 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초과지급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면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10%에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를 곱해 나온 만큼만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에는 임원 입장에서 살펴보자. 회사

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받는다. 그렇다면 회사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이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소득세법에서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까지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CHECK 2 임원 퇴직급여를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소득세법에 임원 퇴직소득 한도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정관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수령한 퇴직급여를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법인은 규정을 만들고, 규정이 있는 회사는 지급 한도를 높이려고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 그래서 과세 당국은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은 별도로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별도로 정해 2012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그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 인정 한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금액이 소득세법이 정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까지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1

2011년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

임원퇴직소득한도를 계산할 때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을 일단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체 근무월수에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한 월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여기에 퇴직금을 곱해서 나온 금액은 전액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2011년 12월 31일 당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었던 경우

$$\text{퇴직급여} \times \frac{\text{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기간}}{\text{전체 근무 기간}}$$

- 2011년 12월 31일 당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었던 경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을 때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

2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기간에는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무 기간을 곱해 나온 금액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9년 12월 31일을 포함, 직전 3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전부 더한 다음 3으로 나눠서 연평균 급여를 구한다. 이전 근무 기간이 3년이 안되면 근무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를 연환산해서 연평균 급여를 구한다. 이렇게 계산한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무 기간(연수)을 곱해 나온 금액의 3배를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text{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times \frac{1}{10} \times \frac{\text{해당 근무 기간 (월)}}{12} \times 3$$

*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 기간이 3년이 안되면 해당 근무 기간

3

2020년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2020년부터 임원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다시 축소했다. 이전에 3배수를 인정해 주던 것을 2배수만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때 퇴직소득 한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 3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전부 더한 다음 3으로 나눠 연평균 급여를 구한다. 이때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 기간이 3년이 안되면, 해당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계산한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무 기간(연수)을 곱해 나온 금액의 2배를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text{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times \frac{1}{10} \times \frac{\text{해당 근무 기간 (월)}}{12} \times 2$$

* 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 기간이 3년이 안되면 해당 근무 기간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50% 아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현재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CHECK 1 퇴직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덜 수 있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가장 큰 혜택은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된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의 연금수령액에는 퇴직소득세율의 50~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홍길동 씨(55세)가 퇴직급여 2억 원을 일시에 수령하여 퇴직소득세로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홍길동 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2천만 원÷2억 원)다. 홍길동씨가 퇴직금 2억원을 전부 새로 만든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보자. 홍길동씨가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는 먼저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금융회사는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연금 개시 후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10%)의 70%에 해당하는 7%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10%)의 60%에 해당하는 6% 세율로 과세한다. 그리고 21년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10%)의 50%에 해당하는 5% 세율을 적용한다.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50%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에 적용하는 세율

연금 실제 수령 연차	10년 차까지	11~20년 차	21년 차 이후 연금
연금소득세율	퇴직소득세율의 70%	퇴직소득세율의 60%	퇴직소득세율의 50%



CHECK 2 운용 수익에는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절감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해 예금 등 금융 상품에 예치하면 해당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방법과 연금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르다. 가입자 나이가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부터는 3.3% 세율을 적용한다.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3.3% 세율로 과세한다.

세액공제 받고 추가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으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면 16.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에 적용하는 세율

연금 수령 당시 나이	종신형 연금 외	종신형 연금
55~69세	5.5%	3.3%
70~79세	4.4%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CHECK 3 퇴직연금소득에도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이자와 배당소득이 한 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소득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55

퇴직급여, 연금저축과 IRP중 어디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 ☑ IRP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부터 ETF, 펀드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30%는 안전형 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 ☑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 등의 규제는 없지만,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 가입이 불가합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먼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 둘 중 어느 쪽으로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게 유리할까? 연금계좌를 선택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CHECK 1 퇴직 당시 나이는 55세 이상인가?

먼저 퇴직급여의 종류와 퇴직자의 나이부터 살펴야 한다. 먼저 법정퇴직급여부터 살펴보자. 근로자가 55세 전에 퇴직하면 법정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한다. 연금저축에 이체할 수는 없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안되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법정퇴직금을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면서 법정퇴직급여 외에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퇴직자도 있다. 명예퇴직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CHECK 2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

퇴직급여를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실적 배당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는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예금이 있다. 이 밖에 보험사의 GIC(이율보증보험)와 증권사의 ELB(주가연계과생결합사채)도 IRP에서 선택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다.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펀드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실적배당보험이 있다. 이 밖에 주요 증권사에서 IRP 적립금을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ETN, 리츠, 상장 인프라펀드에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일부 은행과 생명보험사도 신탁을 활용해 ETF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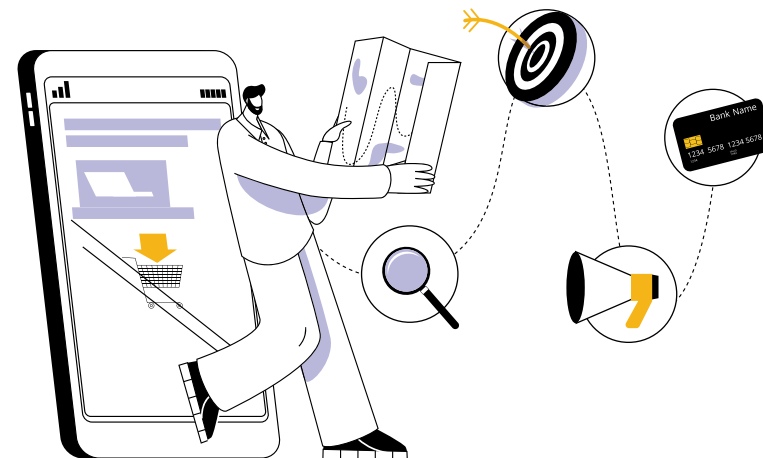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시간 매매가 되지 않고 신탁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연금저축은 펀드, 보험, 신탁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고, 연금저축보험은 금리 연동형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와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와 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IRP와 달리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ETN에 투자하지는 못한다.

위험 자산 투자 한도도 살펴야 한다.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는 주식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와 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 등이 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 상품, 주식 비중이 50% 미만인 펀드와 ETF, 적격TDF,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이와 같은 위험 자산 투자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CHECK 3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

계좌 관리 수수료도 따져봐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IRP는 받는다.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적립금 크기에 따



라 다른데, 평균 0.25% 정도 된다. 최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거나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면 계좌 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금융회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매매 수수료도 따져봐야 한다. 연금저축펀드에서 ETF를 매매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IRP에서 ETF를 사고팔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ETF 매매가 잦은 투자자라면 연금저축펀드보다는 IRP가 적합할 수 있다. ㉮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면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실적 배당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도 펀드와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와 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

구분	투자 가능 여부				
	IRP	연금저축			
		펀드	보험		
실적 배당 상품	펀드	○	○	×	
	실적배당보험	○	×	×	
	국내 거래소 상장	ETF, 리츠	○	○	×
		ETN, 인프라펀드	○	×	×
원리금 보장 상품	예금	○	×	×	
	보험	○	×	○	
	ELB	○	×	×	

내게 맞는 연금수령 방법은 무엇일까요?

- ☑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필요하면 금액지정방식,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연금을 받고 싶으면 기간지정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려면 종신지급방식, 수시로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려면 수시인출방식, 절세를 하면서 최대한 인출하고 싶다면 연금수령한도방식이 적절합니다.

연금자산은 축적하는 것만큼이나 수령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퇴직급여와 운용 수익 등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금융회사마다 연금계좌에서 제공하는 연금수령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여기서는 종신연금방식과 더불어, 미래에셋증권이 연금계좌에서 제공하는 4가지 연금수령방식을 예시로, 그 특징과 활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CHECK 1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고 싶다면?

만약 죽기 전에 노후 자금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이라면 생명보험사가 제공하는 종신연금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종신연금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재원은 소멸된다.

따라서 가입자가 오래 살면 득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종신형연금은 금리형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그리고 일단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는 중도해지할 수 없어 유동성이 떨어진다.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종신소득을 확보하려고 할 때 적

합한 연금수령방식이다.

그렇다면 적립금을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 가능하다. 투자하며 연금 받는 방식은 다시 금액 지정 방식과 기간 지정 방식으로 나뉜다.

CHECK 2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고 싶으면 금액지정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금액지정방식은 가입자가 정한 주기(월, 분기, 반기, 연간)에 맞춰 가입자가 지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주는 방식이다. 금액지정방식의 단점은 연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수익률이 좋으면 오랫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수익률이 나쁘면 연금 수명이 줄어든다.

CHECK 3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기간 지정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기간 지정 방식은 가입자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기(월, 분기, 반기, 연간)에 맞춰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알지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알지 못

한다. 수익률이 좋으면 연금을 많이 받겠지만, 나쁘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CHECK4 절세혜택을 누리며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출하고 싶다면?

연금수령에 따른 절세혜택을 누리면서 최대한 많은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수령한도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연금수령방식은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금계좌 가입자가 적립금을 일정 기간 이상 연금 형태로 인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금수령한도를 정하고,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절세 혜택을 보면서 가능한 한 빠르게 적립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 선택하면 된다.

CHECK 5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하고 싶다면?

수시 인출 방식은 연금수령액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가입자가 원하는 때 원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이다. 퇴직연금 외에 다른 노후 소득원이 있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기본 노후생활비는 다른 소득원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만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된다.

연금수령방식별 특징 및 활용 방법

정기형	주요 내용	활용 방법
금액지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해진 주기마다 일정한 금액의 연금 수령 수익률에 따라 연금수령 기간이 유동적임 	정기적으로 일정한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기간지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수령 기간과 주기를 사전에 확정함 수익률에 따라 연금수령 금액이 변동 됨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원
연금수령한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법이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해당하는 금액 수령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변동 됨 	절세혜택을 누리며 최대 금액 인출
중신연금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적고, 중도 해지 및 변경 불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중신 소득 확보
수시인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 수급자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인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세부담이 늘어남 	다른 소득원이 있을 때 예비자금으로 활용



한 해에 연금을 얼마까지 찾아쓸 수 있나요?

- 연금계좌 적립금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입니다.
-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날이 속한 해를 '1년차'로 봅니다.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연금수령연차는 지나가고, 10년차 이후에는 한도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CHECK 1 연금수령 요건은 제대로 갖췄는가?

연금계좌에 부여하는 세제 혜택을 받으며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연금수령 요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연금계좌 가입자가 55세가 되어야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둘째,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두 번째 조건은 면제된다. 55세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연금계좌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셋째,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CHECK 2 연금수령한도는 얼마나 되나?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눠서 나온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먼저 연금계좌 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부터 살펴보자. 연금을 개시하는 해에는 연금 개시 신청일 현재 계좌 잔액으로, 이듬해부터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 계좌 잔액으로 평가한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날이 속하는 해를 1년차로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연금 개시 신청을 한 해가 아니라 연금 개시 신청이 가능한 날이 속한 해부터 연금수령연차를 기산한다는 점이다. 만약 2025년에 연금수령 요건을 전부 갖췄는데, 2026년에 연금 개시 신청을 했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 개시일(연금 개시 신청일)} \text{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2026년을 2년 차로 본다.

구체적으로 연금수령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례를 하나 들어 살펴보자. 2015년 5월에 DC형 퇴직 연금에 가입한 김미래 씨(55세)가 올해 3월 31일 정년퇴직했다. 김미래 씨는 퇴직 급여 2억 원을 전부 새로 만든 IRP 계좌에 이체하고 즉시 연금 개시 신청을 했다. 이 경우 김미래 씨는 첫째 연금으로 얼마를 수령할 수 있을까? 일단 연금 개시 신청일 현재 계좌 평가 금액은 2억 원이고, 연금수령 연차는 1년 차다. 따라서 연금수령한도는 2,400만 원(= 2억 원 ÷ (11 - 1) × 120%)이다. 김미래 씨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2,400만 원까지는 '연금수령'으로 보고, 2,4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한다. 만약 김미래 씨가 내년에 연금을 개시하고 계좌 평가 금액이 동일하게 2억이라고 하면 2666만 원(= 2억 원 ÷ (11-2) × 120%)이 연금수령한도가 된다.

CHECK 3 2013년 3월 1일 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했나?

퇴직연금 제도와 연금계좌에 가입한 날도 확인해 봐야 한다. 2013년 3월 1일 전에 퇴

직연금에 가입했거나, 연금계좌를 만들었다면 연금수령연차를 6'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퇴직 후 퇴직급여를 2013년 3월 1일 전 개설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연금수령연차를 6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또, DB형 퇴직연금을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했고 해당 퇴직급여를 신규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에도 6부터 시작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연차가 1부터 적용되므로 10년이상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DC형 퇴직연금을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 급여를 2013년 3월 1일 전 개설한 연금계좌, 또는 신규로 개설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연금수령연차를 6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연차가 1부터 시작한다.

참고로,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DC형 퇴직연금을 2013년 3월 1일 전에 개설한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는 없다. 이때는 (신규 개설 포함)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설한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

TIP

연금수령연차 vs. 연금실제수령연차

먼저 연금수령한도를 정할 때 등장하는 연금수령연차부터 살펴보자.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때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날이 속하는 해를 1년 차로 하며,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연차는 경과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연금수령 요건을 전부 갖췄는데, 2026년에 연금을 개시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2026년의 연금수령연차는 2년 차가 된다.

이번에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등장하는 연금실제수령연차에 대해 살펴보자. 현행 세법에서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때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실제수령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연금 개시 후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60%, 21년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5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소득세율을 정할 때는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해를 기준으로 연금수령연차를 기산하기 때문에 이를 '연금 실제 수령연차'라 한다. 앞서 든 예로 살펴보면 2026년의 연금 실제 수령 연차는 1년 차이다.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도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해가 있다면, 이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이때 퇴직소득세율의 50~70%에 해당하는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 이연퇴직소득이 소진되면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CHECK 1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알려면 먼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했는지 살펴야 한다.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수령' 한 것으로 보고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외수령' 한 것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퇴직급여(이연 퇴직소득)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해 주는데, 연금외수령에 해당하면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연금외수령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세(세율 16.5%)를 부과한다.

CHECK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였는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더라도 그 사유가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퇴직연금에서 이야기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

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다.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CHECK 3 연금소득 재원은 무엇인가?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소득 재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김미래 씨(55세)가 퇴직하면서 새로 만든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하고 바로 연금 개시 신청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김미래 씨가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는 이연 퇴직소득부터 연금으로 내어주면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세율은 연금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연금 개시 후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60%, 21년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5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한다.

이연 퇴직소득이 전부 소진되면 금융회사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때는 연금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수급자 나이가 55~69세이면 5.5%,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연금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택한 경우에는 나이와 무관하게 3.3% 세율로 과세한다.

CHECK 4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당할 우려는 없는가?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전액 분리과세 한다. 하지만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운용 수익과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을 재원으로 수령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누진세

율(6.6%~ 49.5%)을 적용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16.5%의 단일 세율로 과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니 잘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자가 연금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각종 공제를 많이 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은퇴자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연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연금소득 재원 및 수령 방식별 과세 방법과 세율

연금소득 재원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이연 퇴직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소득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년차 : 퇴직소득세율의 70% ·11-20년차 : 퇴직소득세율의 60% ·21년차 이후 : 퇴직소득세율의 50% ■ 전액 분리과세 	퇴직소득세율의 100%										
세액공제 받은 저축 금액 운용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 가능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0;"> <thead> <tr> <th>수령 나이</th> <th>종신연금 외</th> <th>종신연금</th> </tr> </thead> <tbody> <tr> <td>55~69세</td> <td>5.5%</td> <td rowspan="3">3.3%</td> </tr> <tr> <td>70~79세</td> <td>4.4%</td> </tr> <tr> <td>80세 이상</td> <td>3.3%</td> </tr> </tbody> </table> ■ 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누진세율 (6.6-49.5%)과 단일세율 (16.5%)중 선택 	수령 나이	종신연금 외	종신연금	55~69세	5.5%	3.3%	70~79세	4.4%	80세 이상	3.3%	16.5% (기타소득세)
수령 나이	종신연금 외	종신연금										
55~69세	5.5%	3.3%										
70~79세	4.4%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DC형에서 가입중인 금융 상품을 IRP로 이전할 수 있나요?

-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할 때는 가입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해서 현금화한 다음 옮겨야 합니다.
- ☑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같은 금융회사 IRP로 옮기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실물 그대로 이전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CHECK 1 DC형과 IRP를 관리해 주는 금융 회사가 동일한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해야 한다. 이때 가입 중인 금융 상품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을 운용하고 관리해 주는 금융회사)가 IRP사업자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하다면, DC형 적립금을 IRP로 이전할 때 금융회사에 따라서 가입 중인 금융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 중인 금융 상품을 가지고 가려면 DC형 퇴직연금을 관리해 주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판매하는 IRP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실물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퇴직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한다. DC형과 IRP를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르면 DC형 퇴직연금에서 가입 중인 금융 상품을 전부 매도해서 현금화한 다음에 이전해야 한다. 퇴직으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로 옮기는 경우에는 무조건 전액 이전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CHECK 2 퇴직 전에 DC형 퇴직연금 간 실물

이전을 활용할 수 있나?

DC형 퇴직연금과 IRP를 관리해 주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르면 가입 중인 금융 상품을 실물 그대로 이전할 수는 없다. 그래도 금융 상품을 실물로 이전하기 바란다면 우회하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먼저 퇴직 이전에 DC형 퇴직연금을 관리해 주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즘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많다. 그리고 1년에 몇 번 기간을 정해서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한 A와 B 중 A를 선택했는데 퇴직할 때가 되니 퇴직급여는 B가 제공하는 IRP에 이전하고 싶다고 해보자. 이때 가입 중인 금융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하기 전에 DC형 퇴직연금사업자를 A에서 B로 변경하면 된다. 이제 DC형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것도 B이고, 퇴직급여를 이체할 IRP도 B가 되니 실물 이전이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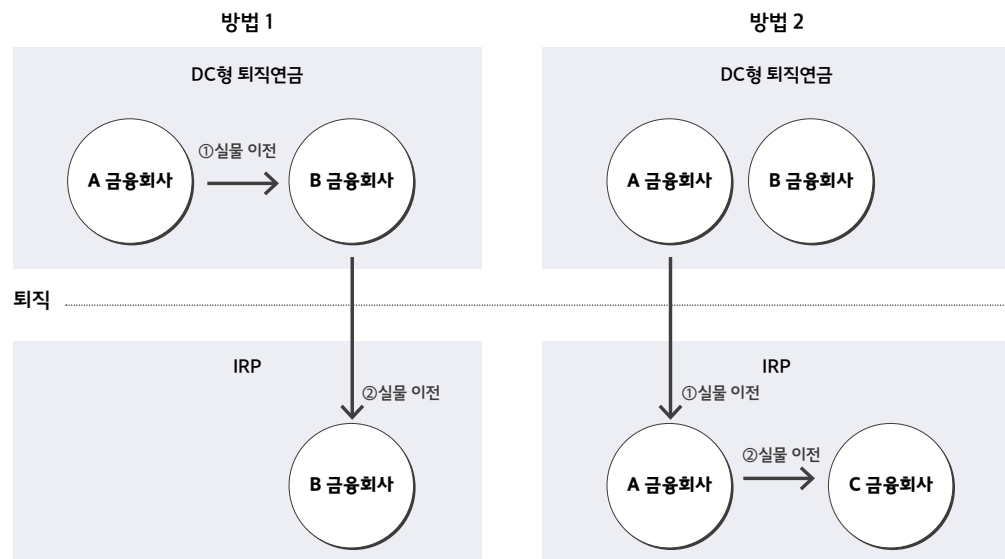
다만 DC형 퇴직연금 간 실물 이전을 할 때는 실물 이전이 안 되는 상품도 있다. 원칙적으로 이관 회사와 수관 회사에서 공통으로 판매하는 금융 상품만 실물로 옮길 수 있다. 리츠, MMF, ELS는 수관 회사 판매와 무관하게 실물 이전을 할 수 없다. 디폴트옵션 상품도 실물 이전 대상이 아니다. 실물 이전이 안 되는 금융 상품은 매도해서 현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CHECK 3 퇴직 후에 IRP 간 실물 이전을 활용할 수 있을까?

회사가 정한 DC형 퇴직연금사업자 중에

퇴직자가 가입하기 희망하는 IRP를 제공하는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선 사례로 돌아가, DC형 퇴직연금의 퇴직연금사업자를 A로 선택했는데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C가 제공하는 IRP에 이체하고 싶다고 해보자. 이때 가입 중인 금융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A가 제공하는 IRP에 가입해 실물 이전을 한다. 다시 C가 제공하는 IRP로 실물 이전을 하면 된다. 다만 IRP 간 실물 이전을 할 때도 DC형과 마찬가지로 실물 이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금융회사가 다를 시 실물 이전 방법



퇴직급여를 중도에 인출할 수 있나요?

- 연금저축으로 옮긴 퇴직급여는 언제든지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 IRP로 이체한 퇴직급여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CHECK 1 퇴직급여를 연금저축에 이체했나, IRP에 이체했나?

퇴직급여를 이체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55세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한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IRP 외에 연금저축에도 법정퇴직급여를 이체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은 퇴직 당시 나이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선택해 이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을 중도에 찾아 쓸 수 있을까? 먼저 연금저축 가입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IRP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IRP 계좌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CHECK 2 IRP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은?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IRP 적립금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중도 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천재지변으로 주거 시설이 전파·반파·유실된 경우, 재난으로 가족이 실종되거나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CHECK 3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

연금계좌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인출 사유에 따라 세목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과 해외 이주 등을 이유로 적립금을 인출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연금소득세율은 인출금 재원에 따라 달라진다.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인출할 때는 3.3~5.5%(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의 세율로 과세하고, 이연 퇴직소득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한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커진다.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인출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16.5% 세율로 과세하고,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과세한다. ㉮

연금저축 가입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IRP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중도 인출 사유와 적용 세율

구분	중도 인출 가능 여부		중도 인출 시 적용 세율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	이연 퇴직소득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	3.3~5.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율의 70% (연금소득세)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에 의해 발생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비	×		○	16.5%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율
가입자 사망과 해외 이주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요양 의료비	○		○	16.5%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율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등					
무주택자 주택 구입비·전세보증금	○	○	16.5%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율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비 외의 사회적 재난에 의한 피해 (주거시설 피해 등)					
그 외 사유	×	×			

여러회사 퇴직금을 모아서 연금수령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 여러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연금계좌에 모아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율의 50~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 퇴직소득세율은 각각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합산해서 분모에, 각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 합을 분자에 두고 산출합니다.

CHECK 1 어떤 회사의 퇴직급여부터 인출할까?

여러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서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자. 연금이 개시되면 어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부터 먼저 연금으로 수령해야 할까? 연금계좌에 이체한 순서대로 퇴직급여가 인출되고 각 퇴직급여별 적용 받는 세율대로 과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퇴직연금을 지급할 때는 어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인지, 언제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인지 따지지 않는다. 이처럼 출처를 따지지 않고 퇴직급여를 모두 합치기 때문에 퇴직급여 인출 시 적용하는 세율 역시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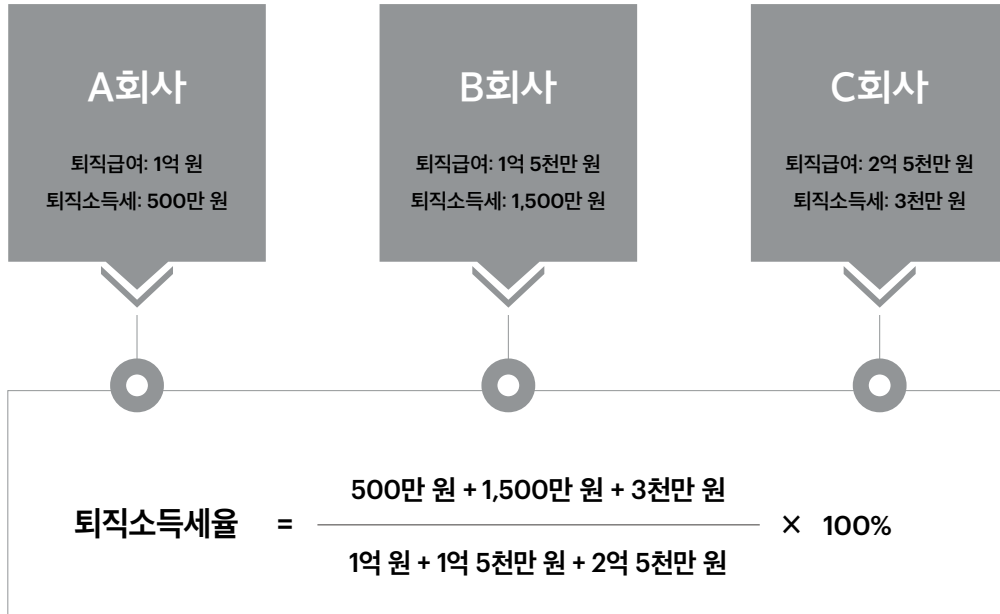
참고로 퇴직급여의 출처에 따라 인출 순서가 정해지진 않지만 적립금 재원의 종류에

따라서는 인출 순서가 정해진다. 가장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인출되고 해당 자금이 소진되면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 순서로 인출된다.

CHECK 2 퇴직소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중요한 것은 퇴직소득세율이다.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율은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금계좌에 하나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만 있다면 손쉽게 퇴직소득세율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연금계좌에 모아서 연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계산이 복잡하다.





이때는 각각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합산해서 분모에, 각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 합을 분자에 두고 퇴직소득세율을 산출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A, B, C 세 곳의 직장에서 퇴직급여로 각각 1억 원, 1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해 보자. 퇴직소득세는 각각 500만 원, 1,500만 원, 3천만 원이다. 먼저 회사 3곳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전부 합산하면 5억 원이다. 그리고 각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전부 합치면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된다.

CHECK 3 연금소득세는 얼마나 내나?

그렇다면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차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한다.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60%, 21년차 이후에는 5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앞선 사례에서 퇴직소득세율은 10%였다. 따라서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내면 연금수령액의 7%를,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6%를, 21년차 이후에는 5%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65



명예퇴직금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 내나요?

-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명예퇴직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퇴직소득세, 후자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에 명예퇴직을 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그중에서는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부득이하게 명예퇴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사업주는 정년보다 빨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급여와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명예퇴직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CHECK 1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일까, 퇴직소득일까? 이 질문은 퇴직자에게 중요하다.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면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하고, 근속연수공제등 각종 공제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사용자의 부담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명예퇴직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이라 할 수 있다.

CHECK 2 명예퇴직금도 IRP에 의무 이체해야 하나?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법정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의무 이체해야 한



다. 하지만 명예퇴직금은 그럴 의무가 없다.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고,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일시금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게 된다. 연금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CHECK 3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반드시 같이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정퇴직급여는 연금계좌에 이체하더라도 명예퇴직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서는 퇴직자에게 연금계좌 또는 급여계좌 한 곳을 정해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함께 수령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명예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계좌로 이체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함께 수령하는 수밖에 없다.

CHECK 4 명예퇴직금 중 일부만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나?

회사에서는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함께 연금계좌로 이체할지,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지 선택하라고 안내한다. 하지만 퇴직자가 원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 퇴직금 중 일부는 일시에 현금으로 받더라도

나머지는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받고 싶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퇴직자가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함께 연금저축에 이체한 다음 일부만 중도 인출할 수 있다. 그게 어렵다면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된다. 연금계좌 이체는 퇴직급여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다시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해당 연금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 중 일부만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 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도 환급받게 된다.

CHECK 5 중간 정산 후 명예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려면?

퇴직소득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속연수다. 같은 금액의 퇴직급여를 받더라도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예를 들어 똑같이 퇴직급여로 3억 원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퇴직자의 근

속연수가 30년이면 1,085만 원, 20년이면 1,984만 원, 10년이면 4,289만 원, 5년이면 6,392만 원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통상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말한다. 해당 기간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다음 소수점 이하 숫자는 올림해서 근속연수를 산출한다. 재직 기간 중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중도 인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중간 정산(중도 인출)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일수를 가지고 근속연수를 산출한다.

따라서 중간 정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예퇴직을 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합친 퇴직소득은 크데 근속연수는 짧기 때문이다. 이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제도를 활용해서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중간 정산 때 수령한 퇴직급여와 최종 퇴직급여를 합산한 후 근속연수의 시작일을 중간 정산 다음 날이 아닌 근로 제공을 시작한 날부터 되돌려 퇴직소득세를 산출한다. 그다음 중간 정산할 때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만큼을 차감한 차액만 과세한다. 즉, 마치 중간 정산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셈이다. ㉮

퇴직소득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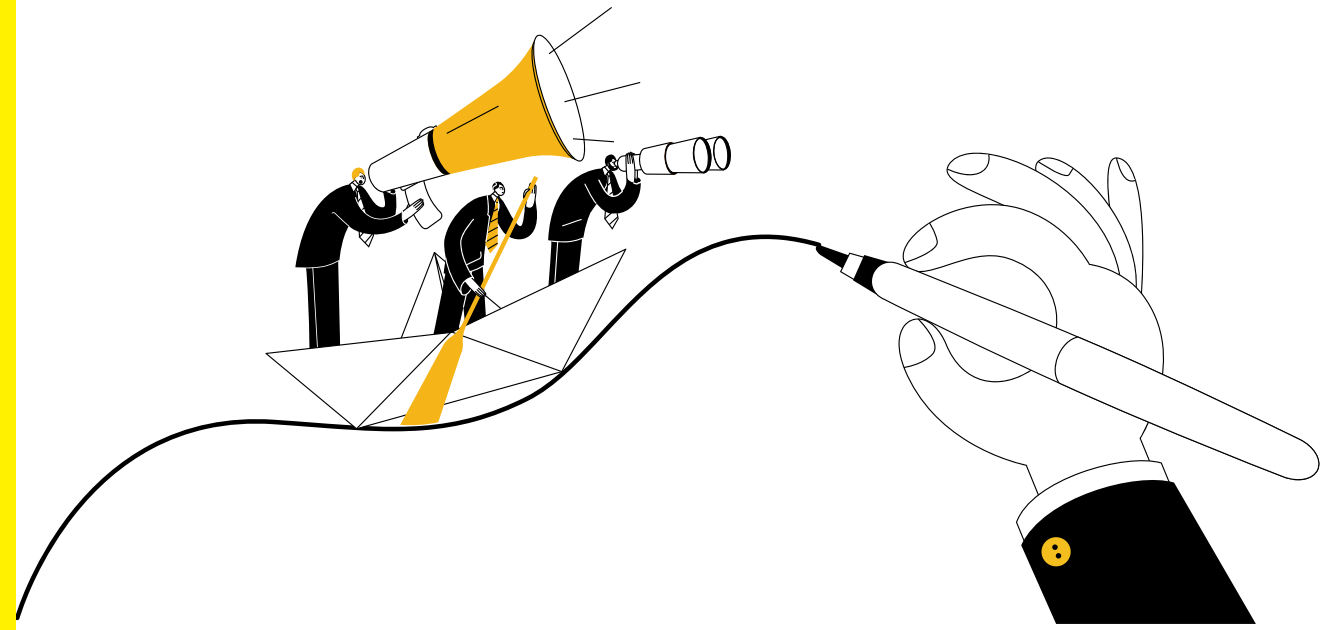
2

PART

개인연금

오래된 연금, 해지하면 안 되나요?

- (구)개인연금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구)개인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해지 하면 이자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퇴직,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대 직장인이나 공무원 중에는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이 가입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연금은 2001년 이후 판매된 개인연금과 구분하기 위해 (구)개인연금으로 불린다.

CHECK 1 퇴직 이후에도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구)개인연금 가입자는 분기 3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축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72만 원이다. 따라서 한 해 18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퇴직 이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저축을 계속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은 안 되지만, 가입한 상품에 계속 저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CHECK 2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구)개인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2000년 이전 가입자라면 이 조건은 이미 충족했을 것이다. 둘째,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 55세 이상이면 재직 중에도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셋째,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면 연금수령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저축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은 (구)개인연금이 유일하다.

CHECK 3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구)

개인연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15.4%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자소득세도 부담스럽지만, 자칫하면 중도 해지한 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목돈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중도 해지 전에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거나, 퇴직하거나,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입원 및 요양이 필요해서 (구)개인연금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6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 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HECK 4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퇴직이후에도 (구)개인연금 상품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런데 수익률이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연금계좌 이전을 하면 된다. 이때 (구)개인연금은 (구)개인연금으로만 이전이 가능하다. 이체시에는 우선적으로 현재 가입하고 있는 상품과 새로 가입할 상품의 특징을 잘 비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보증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변경 후 펀드 투자를 원한다면 하나의 펀드에만 투자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과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구)개인연금 상품의 특징

가입 시기	1994년 6월~2000년 12월
납입 한도	분기 300만 원
소득공제	저축 금액의 40%(연간 최대 72만 원)
연금수령 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수령
연금수령 과세	비과세
중도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적인 경우 이자소득세(15.4%) 부과 ② 부득이한 경우 비과세 유지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 다음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자의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질병·상해 발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파산선고 등 -천재지변
상품 운용	단일 상품 투자

연금수령 시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금융회사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액과 운용수익 순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금액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과세하지 않고,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전액 분리과세 합니다.
-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금소득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합니다.

CHECK 1 연금계좌를 언제 가입했는가?

연금수령 요건은 연금계좌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2013년 3월 1일 전에 연금계좌를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를 10년 이상 유지하면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은 5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2013년 3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가입했다면 해당 연금계좌의 유지기간이 5년으로 짧아지지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한 경우에는 유지기간과 무관하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CHECK 2 연금계좌에 어떤 돈이 들어 있는가?

연금계좌에 어떤 돈이 들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금 원천에 따라 인출 순서와 부과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 크게 넷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입자가 스스로 저축한 금액이 있다. 이 중에는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도 있고, 받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는데, 이를 이연 퇴직소득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과 이연퇴직소득을 운용해서 스

스로 얻은 수익이 있다.

CHECK 3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한 금액부터 먼저 내어 준다.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음은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금융회사는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데, 원천징수세율은 연금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다르다. 10년 차 이하일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60%, 21년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5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한다. 마지막은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한다. 이 때도 금융회사는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는데, 원천징수세율은 연금 수급자의 나이와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연금 수급자가 55~69세면 5.5%,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종신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무관하게 3.3% 세율로 과세한다.

CHECK 4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는가?

금융회사에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만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해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소득이라고 해서 전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 금액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크기에 관계없이 전부 분리과세 하기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남은 것은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다. 해당 연금소득이 한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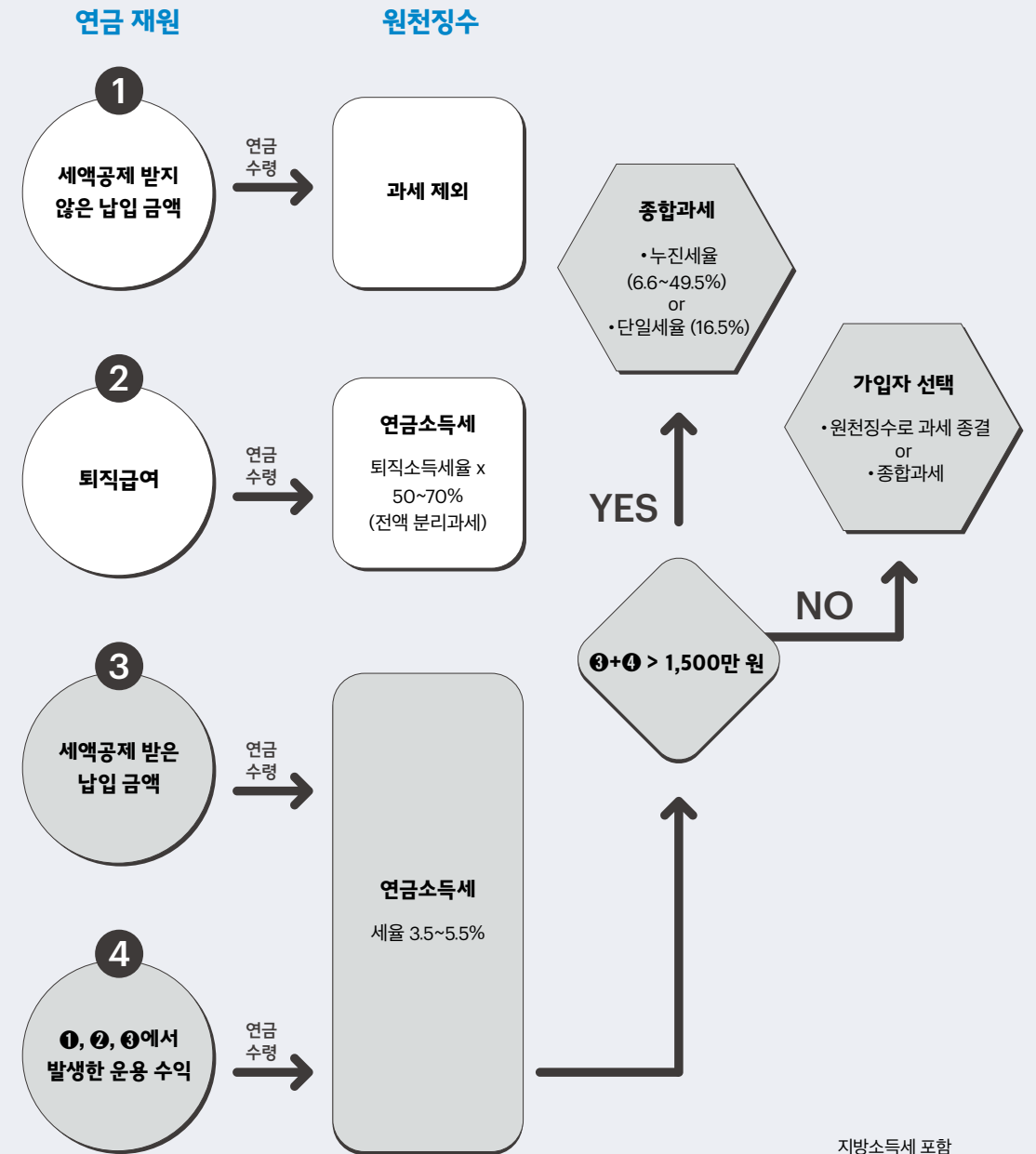
CHECK 5 연금소득세 부담을 덜 방법은 없을까?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한다. 이때

연금 수급자는 해당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누진세율(6.6~49.5%)과 단일세율(16.5%)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자가 해당 연금소득을 종합과세 해달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소득이 많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종합과세 신고를 하면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8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할 때 과세 절차



연금 받으면서도 투자할 수 있나요?

-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연금계좌 적립금은 펀드와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중에 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납입이 필요하다면 연금계좌를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CHECK 1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 나?

먼저 연금저축과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부터 살펴야 한다. IRP계좌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실적 배당 상품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실적 배당 상품으로는 펀드와 실적배당보험이 있다. 이 밖에 주요 증권사 IRP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 ETN, 리츠 등을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다. 일부 은행과 생명 보험사도 신탁을 활용해 ETF 상품을 제

공하고 있지만 실시간 매매는 할 수 없다. 연금저축은 펀드, 보험, 신탁이 있는데, 신탁은 판매가 중지된 상황이고,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하려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주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만 아니라 국내 상장 ETF와 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

CHECK 2 위험 자산 투자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IRP에서 투자를 이어갈 경우에는 위험 자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

금융 상품		연금저축펀드	IRP
원리금 보장	정기예금	×	○
	이율보증보험(GIC)	×	○
	ELB	×	○
실적 배당	채권	×	○
	펀드	○	○
	ETF(국내 상장)	○	○
	리츠(국내 상장)	○	○
위험 자산 투자 한도		없음	70%

산 투자 한도도 살펴야 한다.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와 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 등이 위험 자산에 해당한다.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 상품, 주식 비중이 50% 미만인 펀드와 ETF, 적격TDF,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이와 같은 위험 자산 투자 한도를 적용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CHECK 3 연금수령 중 추가 납입할 수 있나?

연금수령을 개시한 다음 해당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을까? 「소득세법」에서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납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금계좌를 하나 더 개설해야 한다. IRP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한 곳에서 계좌 하나만 만들 수 있지만, 연금을 개시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추가로 납입되는 금액이 없는 만큼 연금 개시 후 새로운 투자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품을 일부 환매해야 할 수도 있다. ETF의 경우 당일 매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ETF를 매수할 수 있지만, 실제 현금화하는 데에는 2영업일이 소요된다. 펀드의 경우 매도해서 현금화하기 까지 4~10영업일 이상이 소요된다. 펀드는 현금화가 완료된 다음에 다른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

금융 상품 종류별 IRP 내에서의 투자 한도

구분	위험 자산	비위험 자산
금융 상품 종류	주식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 (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 등	원리금 보장 상품, 주식 비중이 50% 미만인 펀드(ETF), 적격 TDF, 디폴트옵션 상품 등
투자 한도(잔고 기준)	70%	100%



연금수령 시 금융상품은 어떤 순서로 매도하나요?

- ☑ 연금이 개시되면 가입자가 정한 순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매도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 ☑ 가입자가 매도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연금저축펀드는 금융상품 투자비중에 비례해서 매도합니다.
- ☑ IRP는 금융회사가 정한 순서에 따라 매도하는데, 통상 현금성자산, 원리금보장상품, 안정형 디폴트옵션상품, 원리금 비보장상품 순으로 매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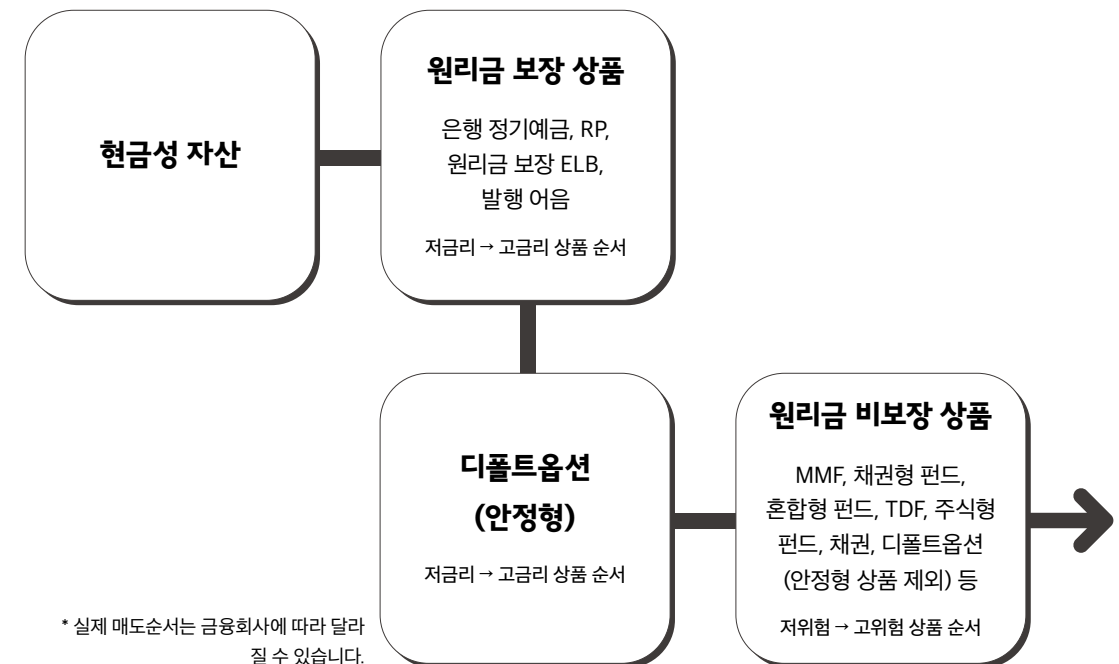
연금을 개시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가입자가 연금수령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금융 상품 중 일부를 매도해서 연금 지급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하지만 현금을 마련해 두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CHECK 1 금융 상품 매도 순서는 정해 두었는가?

연금 개시 전에 가입자가 매도 순서를 정해 두면,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정한 순서에 따라 금융 상품을 환매해서 연금을 지급한다. 그렇다면 가입자가 매도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연금저축펀드는 금융회사마다 나름의 가이드에 따르되, 금융상품 투자 비중에 비례해 일률적으로 매도되기도 한다.

연금 개시 후 금융 상품 매도 순서 예시 (IRP)

가입자가 매도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반면, IRP는 금융회사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금융 상품을 자동 매도한다. 단, 금융회사마다 매도 순서나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그중 하나의 사례를 꼽아 살펴보자.

CHECK 2 원리금 보장 상품은 어떤 순서로 매도하나?

가입자가 매도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현금성 자산부터 연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성자산이 없으면 원리금 보장 상품을 매도해 연금을 지급한다. 원리금 보장 상품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매도한다. 투자 금액과 만기를 고려하지



원리금 보장이 안 되는 실적 배당 상품을 매도할 때는 저위험 상품부터 고위험 상품 순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다. ETF나 리츠는 자동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매도해야 한다.

않고 금리가 낮은 상품을 먼저 매도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매도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좋다.

CHECK 3 안정형 디폴트옵션 상품이 있는가?

원리금 보장 상품 다음으로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 안정형 상품이 매도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위험 등급에 따라 안정형, 안정투자형, 중립투자형, 적극투자형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안정형 상품은 은행 예금과 보험사 이율보증보험(GIC)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CHECK 4 실적 배당 상품은 어떤 순서로 매도하나?

마지막은 원리금 보장이 안 되는 실적 배당 상품을 매도할 차례다. 여기에 속하는 금융 상품으로는 펀드, 안정형을 제외한 디폴트옵션 상품, 채권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을 매도할 때는 저위험 상품부터 고위험 상품 순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다. ETF나 리츠는 자동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매도해야 한다. 또한 원활하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금융회사가 연금수령일보다 10~15일 전에 인출 금액을 확정하고 매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 ☞

월배당 ETF를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일반계좌에서는 ETF 분배금을 배당소득(세율 15.4%)으로 과세합니다.
- 연금계좌에서 ETF 분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배당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연금계좌에 발생한 사적연금소득에는 아직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CHECK 1 월배당 ETF는 어떤 금융 상품인가?

월배당 ETF는 매달 분배금을 나눠주는 ETF를 말한다. 분배금이란 ETF의 기초 자산에 발생하는 배당, 이자, 임대료, 프리미엄과 같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분배금을 지급하는 주기는 ETF에 따라 다르다. 통상 주식형 ETF는 일년에 서너 번 분배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ETF는 일년에 한 번 정도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CHECK 2 투자대상과 분배금 재원은 무엇인가?

월배당 ETF는 투자 대상 자산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부동산형, 혼합 자산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형인데, 배당률이 높거나 배당을 꾸준히 증액해 온 주식에 투자한다. 그리고 이들 주식에서 배당금을 수령해 분배금으로 지급한다. 최근에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커버드콜 전략이란 주식을 매

수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한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현재 확실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때 주식 배당과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이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밖에 리츠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확보해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도 있고, 국내외 국채와 회사채에 투자해서 얻은 이자 수입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다.

CHECK 3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은퇴자가 월배당 ETF에 투자할 때는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살펴야 한다. 국내에 상장된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한다. 월배당 ETF의 분배금을 포함한 배당과 이자 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많은 은퇴자는 세 부담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등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본다.

연금계좌에서 분배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는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5.4%)보다 세율이 낮다.



늘어날 수 있다. 세금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살펴야 한다. 대다수 은퇴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이자와 배당도 포함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 소득이 연간 1천만원 이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초과하면 그해 이자와 배당 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율은 7.19%(2026년)이고,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 요양 보험료로 추가된다. 둘을 합치면 보험료율이 8.13% 정도 된다.

CHECK 4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가입하면 적립금을 국내 상장 월배당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과 운용 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연금계좌에서 분배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는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5.4%)보다 세율이 낮다.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이 넘으면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하지만 이때도 연금 수급자가 누진세

율(6.6~49.5%)과 단일세율(16.5%)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 연금소득에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CHECK 5 연금계좌에서 분배금 인출 순서는?

연금계좌에서 이연 퇴직소득을 월배당 ETF에 투자하고 매달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연금계좌 가입자는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는 걸까, 아니면 분배금을 수령하는 걸까? 가입자는 매달 분배금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세법상으로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는 연금계좌에서 이연 퇴직소득부터 연금으로 수령하고, 다음으로 운용 수익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연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50~7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하고,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3~5.5% 세율로 과세한다. ☞

월배당 ETF의 기초 자산별 분배금 재원

기초 자산	투자 목표 및 전략	분배금 재원
배당주	배당률이 높거나 배당을 꾸준히 증액해 온 주식에 투자	주식 배당
커버드콜	주식을 매수하고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 미래 주가 상승에 따른 불확실한 수익 중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현재 확실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 확보	주식 배당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 (국내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
리츠	리츠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 확보	리츠 배당
채권	국내외 국채와 회사채에 투자해 이자 수입 확보	채권 이자

일하면서 연금받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연금계좌 가입자는 연금수령 조건만 충족하면 재직 중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금수령 중인 연금계좌에는 추가적립을 할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적립용 연금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합니다.

CHECK 1 재직 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2013년 3월 1일 전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10년, 그 이후에는 5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은 따지지 않는다. 둘째,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셋째, 일정 기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5년,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는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CHECK 2 연금 개시 후에도 저축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일단 연금을 개시하면 해당 계좌에는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연금계좌에 저축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연금화씨(55세)는 올해부터 임금피크 적용을 받는데 2010년에 가입한 IRP 계좌가 있다고 해보자. IRP 계좌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고, 연금화씨도 55세가 됐기 때문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연금수령 기간만 5년 이상으로 정하면 된다. 하지만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

고, 여기에 저축하면 된다. 한 쪽 연금계좌에서는 연금을 수령하고, 다른 쪽 연금계좌에서는 저축을 하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CHECK 3 금융회사 한 곳에서 연금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금융회사 한 곳에서 여러 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IRP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계좌를 하나만 만들 수 있지만, 가입 중인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IRP 계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CHECK 4 연금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적립금은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 계좌 적립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중도인출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때, 가입자와 부양가족이 일정 기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 밖에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중도인출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13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85

연금보험 가입자는 어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연금은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연금저축과 그렇지 않은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늘어난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CHECK 1 소득공제인가, 세액공제인가?

개인연금 상품은 저축 금액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세제적격 연금 상품과 이 같은 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득공제 혜택부터 살펴보자. 소득공제란 저축 금액을 가입자의 소득에 빼주는 것이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납부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구)개인연금이 있다. 이 상품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됐다. 신규 가입은 할 수 없지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계속 저축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당 3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저축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한 해 최대 72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세액공제 혜택을 살펴볼 차례다. 소득공제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 공제는 결정된 세금 중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한 해 종합소득이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세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	가입자의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세율 적용의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준다.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납부할 세금을 줄여준다.
특징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음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

공제 대상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준보다 소득이 많으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CHECK 2 연금보험인가, 연금저축보험인가?

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헛갈려 하는 것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다. 이들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큰 차이가 난다. 먼저 연금저축보험부터 살펴보자. 앞서 세제 적격 개인연금 상품에 연금저축이 있다고 했다. 연금저축은 운용 주체에 따라 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적격 개인연금 상품이다.

반면 연금보험 가입자는 저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저축할 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세제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CHECK 3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보험료 납입 방식과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일시납 연금보험은 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적립식 연금보험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수령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면 한도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완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으며, 연금 지급 보증 기간을 기대 여명 이내로 정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해야 하고, 사망할 때 연금 재원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

VS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 받는 시점	보험료 납입 시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단,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세제 혜택 내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세액공제, 단,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
일시납: 10년 이상 유지, 납입 금액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 원 이하 종신형: 보험료 납입 계약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	세제 혜택 요건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보험료 10년 이상 납부 •55세 이후 연금 개시 •5년 이상 연금 수령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보험료 5년 이상 납부 •55세 이후 연금 개시 •10년 이상 연금 수령
이자소득세 납부 (세율 15.4%)	세제 혜택 요건 미충족 시	기타소득세 납부 (세율 16.5%)
만 45세 이후 (선택 가능)	연금개시	만 55세 이후

종신·확정·상속형 연금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연금보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금수령방법에는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이 있습니다.
- 종신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확정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 사망과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합니다.
- 상속형은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만기가 도래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남은 적립금을 수령합니다.

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CHECK 1 언제 연금을 개시할 것인가?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지만 연금보험 가입자는 빠르면 45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보험에 가입한 시기, 상품의 종류, 연금수령 방법 등에 따라 연금 개시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 개시 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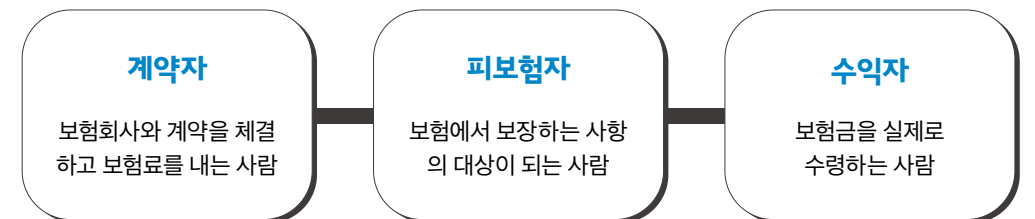
CHECK 2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누구인가?

연금보험 계약의 관계자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로 보험 계약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종신형 연금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한다. 수익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익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종신형 연금을 수령하면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계속 연금이 지급된다. 반대로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이 살아 있더라도 연금이 중단된다.

단,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정하고, 수익자는 아들로 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연금수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HECK 3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 중 내게 맞는 연금수령 방법은?

생명보험사가 제공하는 연금수령 방법에는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이 있다. 종신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연금 재원은 소멸된다. 다만 연금을 개시할 때 지급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다음에도 지급 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확정형은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연금

을 지급하고, 해당 기간 종료와 함께 연금 재원은 소멸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수령 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속형은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도래했을 때 남은 적립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연금액이 적은 대신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은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 순으로 많다. ㉔

연금보험의 연금수령 방법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내용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	계약자가 사전에 정한 기간 동안 연금수령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금으로 수령하고, 만기 또는 사망 시 남은 원금 수령
특징	확정형에 비해 연금액이 적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종료됨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고, 연금수령 기간이 끝나면 연금 자산이 소진됨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만기(사망) 시 적립금을 상속할 수 있음
활용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원하는 경우

3

PART

국민연금

퇴직 후 소득 없어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퇴직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60세 전에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CHECK 1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퇴직자의 나이부터 살펴야 한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따라서 만 60세 생일이 지나서 퇴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퇴직자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만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살펴야 한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

을 수령하고 있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무소득 배우자도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다.

CHECK 2 납부 예외 신청을 할까, 말까?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취득 신고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취득 신고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 | |
|---|--|
| <p>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우측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연금 등 특수 직역 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 공적 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만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
|---|--|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659만원까지 범위에서 정해진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

소득이 없다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는 없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일단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다음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예외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그만큼 노령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납부 예외 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납부 예외는 가입자가 신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도 가입자가 원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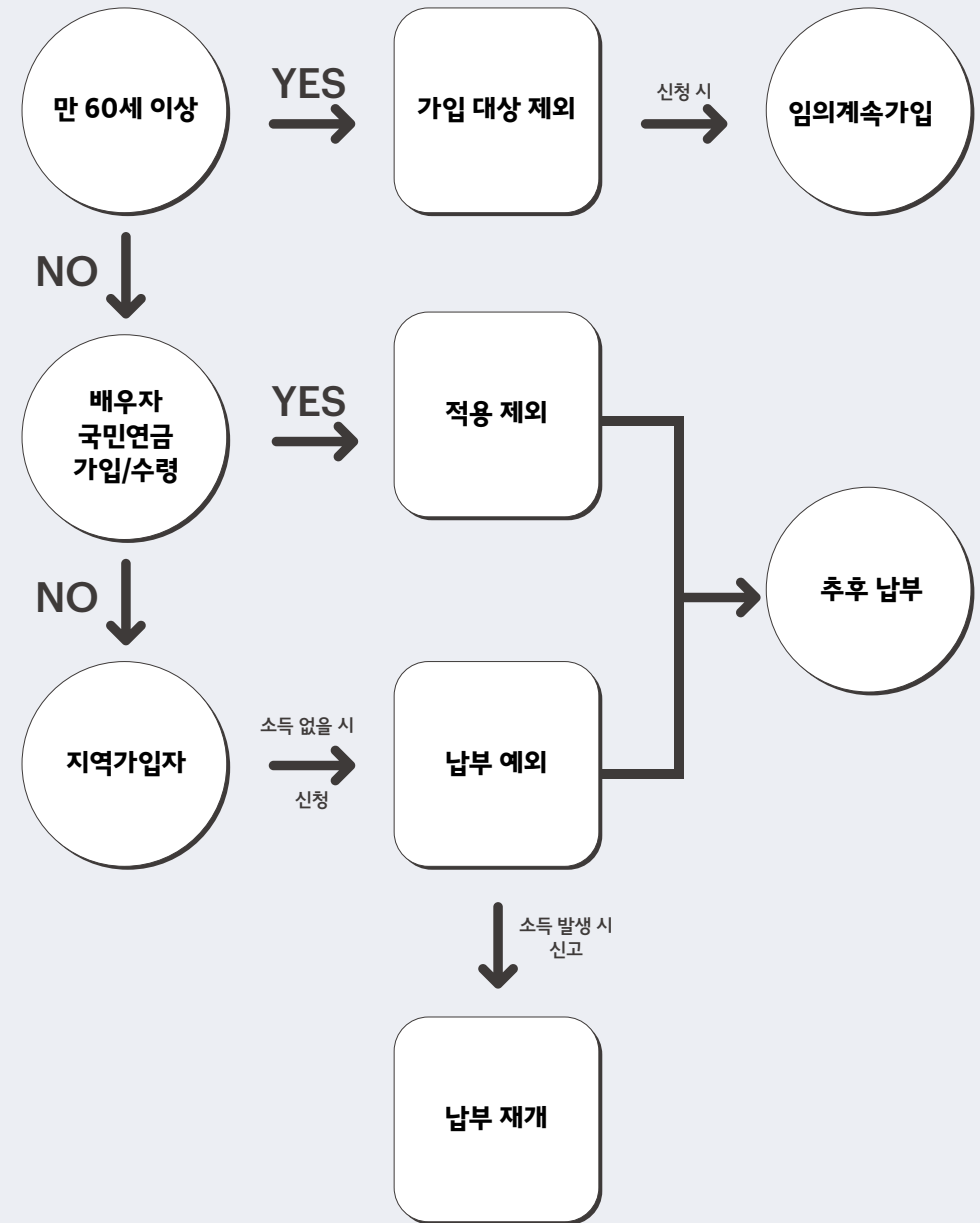
CHECK 3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예외 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발생하

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 재개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된다. 보험료는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에 따라 결정하는데,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3분의 1을 넘으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㉔

퇴직후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처리



무소득 배우자가 노령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소득배우자도 임의가입을 해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실직 또는 경력단절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노후 준비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역 시절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외벌이를 해야 한다. 은퇴 후에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며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없을까?

CHECK 1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의사가 있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적 연금 가입자 또는 공적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중에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만 27세 미만인 자도 의

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 한다.

CHECK 2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낼까?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본인 소득의 9.5%(2026년)를 보험료로 내지만, 임의가입자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가 없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에서는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두고 임의가입자로 하여금 해당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text{연금보험료} = \text{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times \text{연금보험료율 (9.5\%,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96,235원(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만 3천 × 9.5%)부터 60만 5,150원(637만 원 × 9.5%) 사이에서 선택 가능


보험료 상한부터 살펴보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정해 두고 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 원이다. 따라서 637만 원의 9.5%에 해당하는 60만 5150원이 보험료 상한이다. 보험료 하한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

준으로 책정된다.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 사이에 적용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1만 3,000원이고, 이 금액의 9.5%인 96,235원이 보험료 하한이다. 임의가입자는 96,235원에서 60만 5,150원 사이에서 보험료를 선택하면 된다.

CHECK 3 얼마나 오래 보험료를 내야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임의가입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이 되면 된다. 그래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60세 이후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임의가입기간,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CHECK 4 노령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노령연금수령액은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는다. 다만 국민연금은 세대 내 소득 재분배를 실시하기 때문에 보험료에 정비례해서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표는 2026년에 국민연금을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수령액을 나타낸 것이다. 



노령연금 예상 월액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B값)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9.5%	10년	20년	30년	40년
101만 3,000원	9만 6,235원	22만 5,400원	45만 1,870원	67만 7,810원	90만 3,750원
200만 원	19만 원	27만 9,150원	55만 8,300원	83만 7,450원	111만 6,600원
300만 원	28만 5,000원	33만 2,900원	66만 5,800원	99만 8,700원	133만 1,600원
400만 원	38만 원	38만 6,650원	77만 3,300원	115만 9,950원	154만 6,600원
500만 원	47만 5,000원	44만 400원	88만 800원	132만 1,200원	176만 1,600원
600만 원	57만 원	49만 4,150원	98만 8,300원	148만 2,450원	197만 6,600원
637만 원	60만 5,150원	51만 4,030원	102만 8,070원	154만 2,110원	205만 6,150원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원/월), 2026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 하여, 2026년 적용 A값 (3,193,511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실제 연금액은 A값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연금 더 받나요?

- 1999년 이전에는 퇴직후 1년이 지나면 국민연금공단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 과거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1999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70%)이 높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반납을 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하는 것을 반환일시금이라 한다. 지금은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만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이전에는 사정이 달랐다. 당시에는 직장에서 퇴직하고 1년만 지나면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추후 받을 노령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노령연금수령액을 복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CHECK 1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 있나?

국민연금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

반납금에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0%	10%	10%	10%	10%	10%	8.5%	9.1%	9.4%	9.4%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3%	8.2%	7.0%	6.8%	4.3%	4.3%	3.6%	3.0%	3.2%	3.6%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8%	3.7%	2.8%	2.7%	2.8%	2.6%	2.2%	1.8%	1.3%	1%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4%	1.6%	1.1%	0.7%	1.2%	3.5%	3.0%	2.6%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특수은행 제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

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가 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때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을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CHECK 2 이자 비용이 적지 않은데, 반납하는 게 유리할까?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이라고 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에 대비해 수령하게 되는 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하던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을 70%로 적용했다. 하지만 1999년에는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고, 2008년에는 다시 50%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이후 매년 0.5%씩 소득대체율을 낮춰서 2025년에는 41.5%가 됐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해서 적용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낮으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노령연금을 적게 받게 된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이용해 소득대체율이 70%였던 1998년 이전 가입기간을 회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때는 이자도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반환일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구분	1988-1998년	1999-2007년	2008-2025년	2026년 이후
소득대체율	70%	60%	50% → 41.5% (매년 0.5%씩 감소)	43%

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했을 때 늘어나는 노령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반납 금액을 다른 연금 상품에 투자하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비교해 봐야 한다. 그런 다음에 반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반납하면 된다.

CHECK 3 반납 보험료는 한 번에 납부해야 하나?

반환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종전에 납부했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2년 이상~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반환일시금 분할 반납 가능 횟수

종전 가입기간	분할 반납 횟수
1년 미만	3 회
1년 이상~5년 미만	12 회
5년 이상	24 회

CHECK 4 반납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기 때문에 2001년 이전의 보험료를 반납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01년 이전 기간의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¹⁾

과거에 안 낸 보험료를 지금 낼 수 있나요?

-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과거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늘리고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에 추후납부기간(월)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추후납부보험료는 일시금으로 내거나, 최대 60회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CHECK 1 추후 납부 대상 기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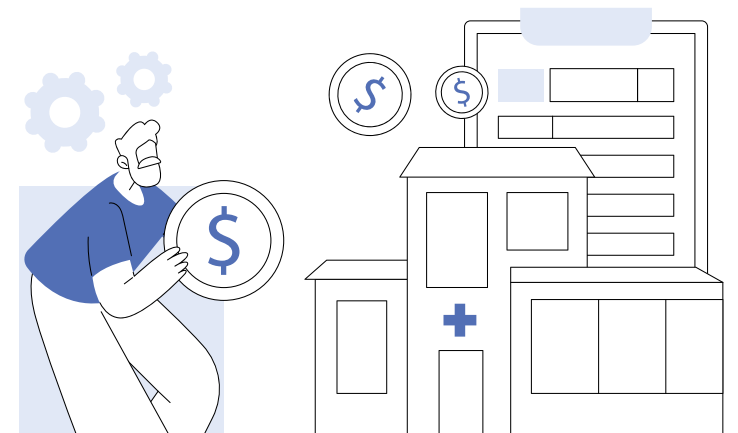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가입자이거나 공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업주부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만 27세 미만의 군인과 학생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적용 제외'라 한다.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납부 예외'라 한다. 이렇게 납부 예외 기간이나 적용 제외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이 밖에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도 추후납부 대상기간에 포함된다.

CHECK 2 추후 납부를 하려면 언제 할 수 있나?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력 단절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해서 가입 자격을 회복해야 추후 납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 납부를 하려면 과거 최소 한 달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최근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게 해 한 달치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자녀가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CHECK 3 추후 납부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추후 납부 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에 추후 납부를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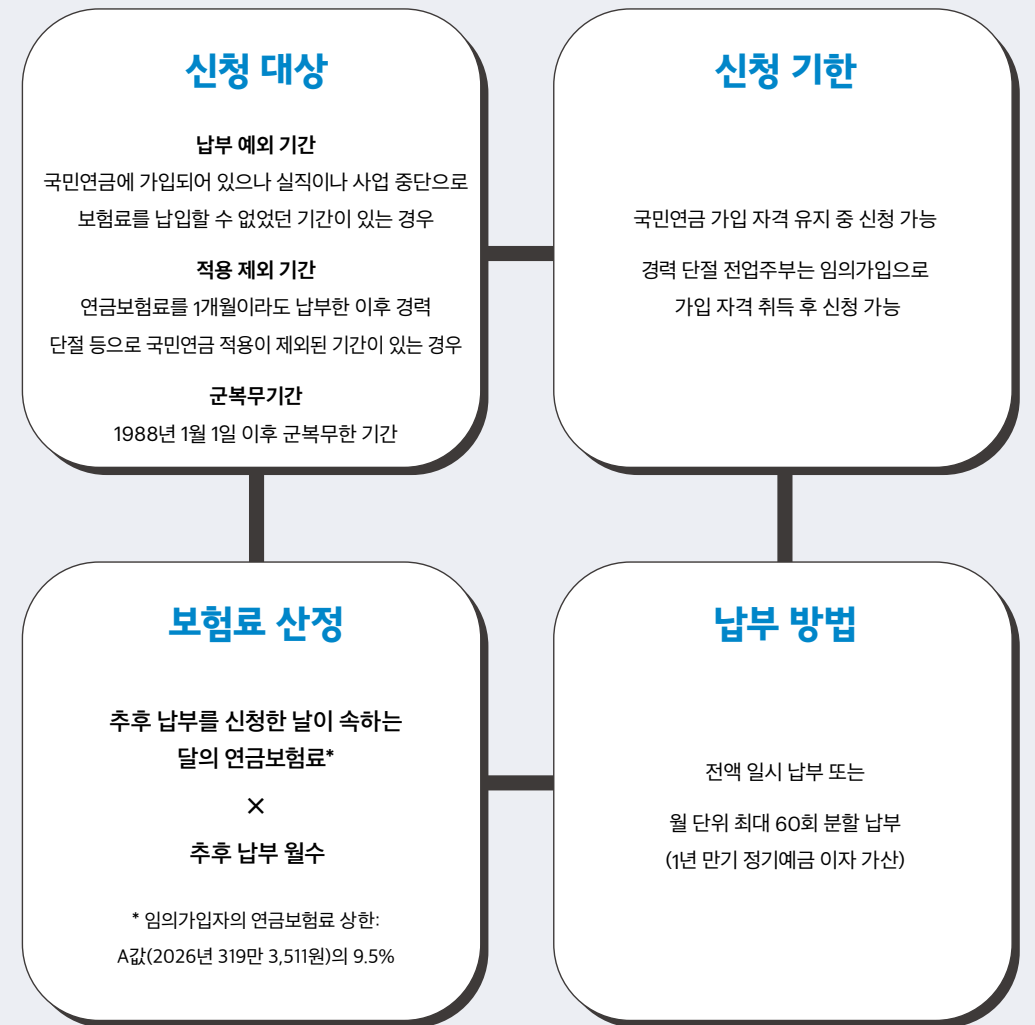
망하는 기간을 곱해서 산출한다. 가령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가 20만 원이고, 추후 납부 기간이 100개월이라면 추후 납부 보험료로 2천만 원(20만 원×100개월)을 납부해야 한다. 추후 납부 보험료는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월 단위로 최대 60회로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분할 납부를 선택하면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추후 납부 할 수 있는 기간은 적용 제외 기간과 납부 예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19개월까지다.

CHECK 4 임의가입 하고 바로 추후 납부를 하면 보험료는?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임의가입 할 때 가능하면 연금보험료를 높게 정하고 추후 납부를 신청하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를 허용하면 추후 납부 제도가 일부 자산가들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임의가입자의 추후 납부 보험료에 한도를 두고 있다.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달의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A값 (2026년 3,193,511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A값의 9.5%에 추후 납부 할 기간(월)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추후 납부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군복무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나요?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한 사람은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후납부 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2025년말 이전에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6개월, 2026년 이후 전역한 경우는 실제 병역수행기간(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CHECK 1 군복무기간 보험료도 추후 납부 할 수 있나?

국민연금 추후 납부라고 하면 과거 납부 예외 기간 또는 적용 제외 기간에 안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다. 군복무기간 보험료도 추후 납부 할 수 있다. 여기서 군복무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의 보험료만 추후 납부 할 수 있다.

CHECK 2 과거 납부 경험이 없는데도 추후 납부 할 수 있나?

납부 예외 기간 또는 적용 제외 기간 보험료를 추후 납부 하려면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 이상 낸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군복무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를 할 때는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없어도

추후 납부 할 수 있는 기간

- 1 실적, 사업 중단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어 납부 예외 신청을 한 후 납부 예외가 된 기간
- 2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
- 3 1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이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적용 제외가 된 경우
 -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 제외가 된 기간
 -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 제외가 된 기간
 -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 제외가 된 기간
 -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제외가 된 근로기간



된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면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 납부 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 예외 기간, 적용 제외 기간, 군복무기간을 합산해 최대 119개월이다.

CHECK 3 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연금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추후 납부 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 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해 산출한다. 그러면 군복무 추후 납부를 하면 노령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날까? 노령연금수령액은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소득, 추후 납부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가 늘어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추후 납부를 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추후 납부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추후 납부를 하면 노령연금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CHECK 4 군복무 추후 납부를 하고 군복무 크레딧 적용도 받을 수 있나?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6개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실제 병역수행기간(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추가되는 가입기간의 급여액은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의 A값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2026년에 적용되는 A값은 319만 3,511원이다. ⁶⁾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매달 연금으로 받는 급여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고, 일시금 형태로 받는 급여로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CHECK 1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나뉜다. 매달 받는 연금급여부터 살펴보자.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때 지급된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장애연금도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다.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달라진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이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연금급여(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일시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장제 (葬祭, 장례와 제사) 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CHECK 2 국민연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로 반환일시금이 있다.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했는데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된다. 이 밖에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반환일시금 외에 사망일시금도 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

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CHECK 3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수령한다. 기본연금액을 결정짓는 요소는 A값, B값, 가입기간, 소득대체율이다. 여기서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라 할 수 있다. 지급률은 연금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진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기

본연금액의 50%를 지급한다.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지급률을 5%(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한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20년이 되면 기본연금의 100%를 수령할 수 있다.


장애연금 지급률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다. 장애등급이 1급이면 기본연금의 100%, 2급이면 80%, 3급이면 6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한다.

CHECK 4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을 더 많이 받나?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 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가 있다. 자녀와 부모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된다. 2026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는 연

30만 6,630원, 부모와 자녀는 1인당 20만 4,360원이다.

CHECK 5 연금수령액을 손쉽게 알 수 없을까?

사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연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복잡한 산식을 전부 기억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손쉽게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다.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p>*노령연금의 지급률</p> <p>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 ÷ 12'만큼씩 가산)</p>	<p>*장애연금의 지급률</p> <p>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 225%(일시금)</p>	<p>*유족연금의 지급률</p> <p>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p>

노령연금, 언제 어떻게 받나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CHECK 1 나는 몇 살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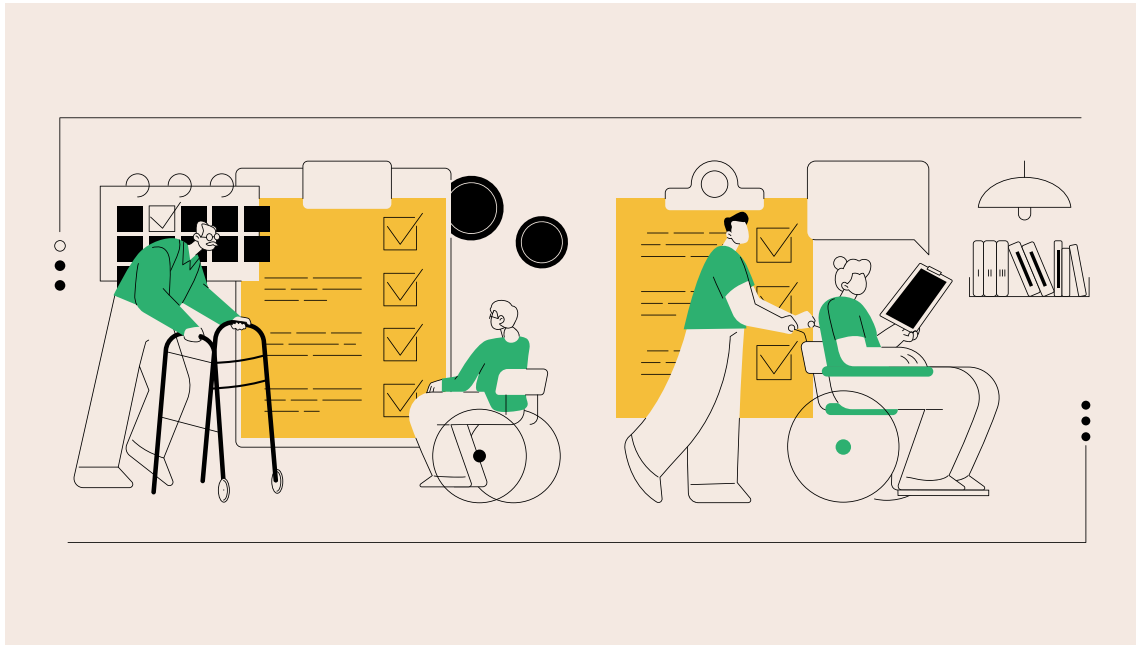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면 노령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은 수급 가능한 최소 연령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지급개시연령이라 한다.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0세였다. 이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급개시연령을 순차적으로 늦춰가고 있는 중이다.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개시연령은 만 나이가 기준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부터 받을 수 있다.

CHECK 2 깜박 잊고 노령연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기간의 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청구하더라도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25일에 노령연금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6년 5월 2일에 청구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최근 5년에 해당하는 2021년 5월부터 2026년 5월분 급여는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6년 6월분부터는 매월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CHECK 3 노령연금 청구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 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하는 일명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통한 청구도 가능하다. 85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선원수첩]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 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에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같음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당 시 필요한 서류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 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소득이 없으면 노령연금 당겨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노령연금을 최장 5년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개시를 1년 앞당기면 연금액이 6% 줄어듭니다. 따라서 5년 조기 수령 하면 연금액이 30% 감액됩니다.

CHECK 1 누구나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노령연금을 최장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A값보다 많을 경우를 말한다. A값이란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2026년 적용되는 A값은 월 319만 3,511원이다.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연금수급자의 '월평균 소득금액' > 'A값'



연금수급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 조기노령연금 신청불가

$$\text{월평균 소득금액} : \left[\begin{array}{l} \text{근로소득금액:} \\ \text{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사업소득금액:} \\ \text{총수입 금액 - 필요경비} \end{array} \right] \div \begin{array}{l} \text{종사 개월 수:} \\ \text{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 \text{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 \text{해당 연도 1월부터} \\ \text{12월까지 기간 중} \\ \text{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end{array}$$

A값: 연금수령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6년 A값 = 319만 3,511원)

CHECK 2 연금 개시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나?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노령연금을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개시 시기(지급개시연령)

출생 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CHECK 3 빨리 받으면 적게 받게 되나?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아야 한다. 노령연금을 1년 앞당겨 수령하면 기본연금액이 6% 줄어들고, 2년 앞당겨 받으면 12%, 3년 앞당겨 받으면 18%, 4년 앞당겨 받으면 24%, 5년 앞당겨 받으면 30% 감액된다. 예를 들어 1966년생이 64세에 연금을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을 100% 수령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서 59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기본연금액의 70%만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

청구 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1966년생(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64세)의 경우

청구 당시 연령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지급률	70%	76%	82%	88%	94%

※ 1966년생이 59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

CHECK 4 조기노령연금수령 중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이후 받은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면 반납해야 한다. 환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에 받을 노령연금에서 환수 금액에 연체료를 더해 차감한다.

환수 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하면 한다.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추후에 다시 지급을 신청하면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



소득이 많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되나요?

-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519만원(A값+200만원) 보다 많으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감액없이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CHECK 1 어떤 소득이 얼마나 많으면 감액되나?

노령연금을 개시하고 5년간은 월 평균 소득이 519만원 (A값 + 200만원)보다 많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된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말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월평균 소득금액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무 개월수로 나눠서 산출한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고,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것이다. 2026년에 적용되는 국민연금 A값은 319만 3,511원이다.

CHECK 2 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이 얼마나 감액될까? 감액되는 금액은 본인의 월 소득금액이 A값보다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A값을 초과한 소득월액에 대해 적게는 5%에서 시작해서 많으면 25%까지 감액되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 6월 17일부터는 A값 초과 소득월액이 연금액을 감액한다. 감액 한도는 노

령연금의 2분의 1이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본래 받아야 하는 노령연금 전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CHECK 3 노령연금 감액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까지이다. 5년을 넘어서는 다시 본래 받아야 할 노령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노령연금 감액을 피하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노령연금 개시 시기를 최장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기간을 건너뛰는 것이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노령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1년에 7.2%씩 더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개시 시기를 5년 늦추면 노령연금수령액이 36% 늘어난다. 다만 늦게 받는 만큼 연금수령 기간이 줄어들므로 건강 상태도 고려해서 연기 여부를 정해야 한다.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의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

A값 초과 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총급여	월급여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5만 원+ (2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7,454만 6,046원 이상	632만 2,117원 이상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30만 원+ (3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8,717만 7,625원 이상	737만 4,749원 이상
400만 원 이상	50만 원+ (4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 원 이상	9,980만 9,204원 이상	842만 4,502원 이상

2026년 6월 17일 이후부터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감액대상에서 제외

노령연금 늦게 받으면 득일까요, 실일까요?

-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장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를 1년 늦추면 연금액이 7.2% 늘어나고, 5년을 늦추면 36% 늘어납니다.
- 노령연금 개시를 늦추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을 늦춘 만큼 수령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과 기대수명을 고려해서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CHECK 1 노령연금 개시를 늦추면 어떤 혜택이 있나?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를 최장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기연금이라 한다. 노령연금 개시 시기를 1년 늦추면 연금액이 7.2% 늘어난다. 따라서 최장 5년 뒤로 연금 개시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36% 늘어난다. 여기에 연기 기간 동안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까지 더하면 연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연금 개시를 늦춘 만큼 수령 기간이 짧아진다.

CHECK 2 소득활동으로 연금이 감액되면 연기연금을 고려해야 하나?

연기연금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수급자의 소득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을 감액하는데 연기연금을 통해 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액되는 연금액은 소득 크기에 따라 다른데,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노령연금수령액의 절반까지도 감액될 수 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연금 개시 후 5년 동안 진행되는데,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노령연금 개시를 5년 늦추면 감액 기간을 건너뛸 수 있다.

[예시] 노령연금 연기로 늘어나는 연금액

지급개시연령의 노령연금액	노령연금 연기 기간별 노령연금액				
	1년	2년	3년	4년	5년
100만 원	107만 2,000원	114만 4,000원	121만 6,000원	128만 8,000원	136만 원

본래 노령연금 급여액의 100%를 지급 연기했다고 가정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를
최장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기연금이라 한다.

노령연금 개시 시기를 1년 늦추면 연금액이 7.2% 늘어난다.


따라서 최장 5년 뒤로 연금 개시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36% 늘어난다.

CHECK 3 연금액을 더 받더라도 수령 기간이 짧아지면 손해 아닌가?

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함께 건강 상태와 수명도 살펴야 한다. 오래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연기연금 신청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누구도 자신이 몇 살까지 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현재 65세 남성이 8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51.6%나 되고, 9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27.0%다. 여성의 생존율은 이보다도 높다. 65세 여성이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72.0%이고, 90세까지 살아 있을 확률도 47.7%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통계는 통계일 뿐이다. 통계가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 개시 시기를 결정할 때는 소득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CHECK 4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연기연금 신청은 어떻게 할까? 5년보다 적은 기간 동안만 연기하고 싶다면 신청서에 해당 기간에 맞춰 노령연금 수급을 재개할 날을 기재하면 된다. 재지급 희망일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면 5년 연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본다. 연기 기간 중에 노령연금수령을 재개하고 싶은 경우에는 재지급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노령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국민연금 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CHECK 1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 할까?

대답은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같은 연금급여와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과 같은 일시금이 있다. 이 중 노령연금에는 연금소득세, 반환일시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CHECK 2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유는?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근로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

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02년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받지 못했다. 그래서 2002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과세기준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CHECK 3 노령연금수령액 중 과세 대상 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낼까? 세금을 계산하려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먼저 과세기준 금액부터 산출해야 한다. 노령연금수령액 중에서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것만 과세기준 금액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이후에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가 있을 수 있다. 임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소득공제 및 과세 여부

	2001년 12월 31일 이전	2002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 불인정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수령 시	비과세	과세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근로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여기 해당한다. 소득이 있어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만약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과세기준일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는 과세기준 금액에서 빼주는데, 이를 과세제외기여금이라 한다. 과세기준 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바로 과세 대상 연금액이다. 과세기준 금액보다 과세제외기여금이 많은 경우에는 이듬해로 이월된다. 예를 들어 올해 과세기준 금액이 500만 원이고 과세제외기여금이 9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올해는 과세 과세 대상 연금액 0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내년도 과세기준 금액에서 남은 과세제외기여금 400만 원을 빼준다.

CHECK 4 납부할 세금은 어떻게 산출하나?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한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 연금소득공제가 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해 주고, 350만 원 초과~700만 원은 40%, 700만 원 초과~1,400만 원은 20%, 1,400만 원 초과 금액은 10%를 공제해 준다. 이 같은 방법으로 과세기준 금액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 연금소득공제 이외에도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고, 표준공제를 차감해서 납부할 세금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혼자 살고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과세 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일 경우에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504만 원)와 본인 공제(150만 원)를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은 116만 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6%)을 적용해서 세금을 산출하면 6만 9,600원이다. 여기서 표준세액공제(7만 원)를 제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CHECK 5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

노령연금에 부과하는 세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지급 청구 시 제출하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토대로 과세기준 금액, 부양가족 등을 파악해 연금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만약 부양가족 등 신고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말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이를 기초로 세금을 다시 산출한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

급받을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결정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노령연금에 더해 지급받는다. 반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다. 노령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납세 절차는 연말정산으로 끝난다. 하지만 노령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듬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서를 해야 한다. 단, 노령연금 과세기준 금액이 연 350만 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된다. 6

과세 대상 연금액 규모에 따른 납부세액

과세 대상 연금액	770만 원	1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 연금소득공제	504만 원	550만 원	640만 원	690만 원
(-) 본인 공제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 과세표준	116만 원	300만 원	710만 원	1,160만 원
× 소득세율				
= 산출세액	6.96만 원	18만 원	42.6만 원	69.6만 원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 납부세액	0원	11만 원	35.6만 원	62.6만 원

국민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내나요?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노령연금도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노령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는 노령연금의 100%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CHECK 1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소득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연금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과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사적 연금소득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공적 연금 소득만 반영하고 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사적 연금소득에는 아직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CHECK 2 공적 연금소득은 전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나?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이 중 노령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과세소득에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급여 중 노령연금에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수령액 전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걸까?

소득세는 과세기준일(2002년1월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액에만 부과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과세기준일 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발생한 연금액에도 부과된다. 연금소득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노령연금이 전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셈이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한다. 노령연금으로 한 해 1,800만 원을 수령하면 900만 원만 소득으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CHECK 3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도 연금소득이 포함되나?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 가운데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이들이 많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안 내고,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한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는 연금소득의 100%를 소득으로 인정한다.¹⁵⁴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연 1천만 원 초과 시에만 건강보험료 부과	국세청 제공
사업소득	총 수입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 근로소득공제 적용 전 금액	
기타소득	총 수입 금액 - 필요경비	공적 연금공단 제공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만 해당 (사적 연금소득 제외) -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 -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전 납입분에 대한 연금도 포함 - 연금소득공제 적용 전 금액	



4

PART

국민건강보험

퇴직하면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3년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하거나 근로자 1명 이상 채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HECK 1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나?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 남은 이들이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은 받을 수 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41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CHECK 2 퇴직 전보다 건강보험료가 늘어났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어렵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최대 3년까지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42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CHECK 3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도 힘들고,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했지만, 2024년 2월부터 폐지됐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40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CHECK 4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일까, 지역가입자일까?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이들도 많다. 재취업을 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37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65

퇴직 이후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 변화



재취업하거나 개인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자로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7.19%)을 곱해 산정합니다.
- 보수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소득에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CHECK 1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나?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낼까? 대다수 직장인들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받은 보수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데, 이를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때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눠서 산출한다. 2026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된다. 보수월액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 가입자가 부담한다.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 방법 (2026년)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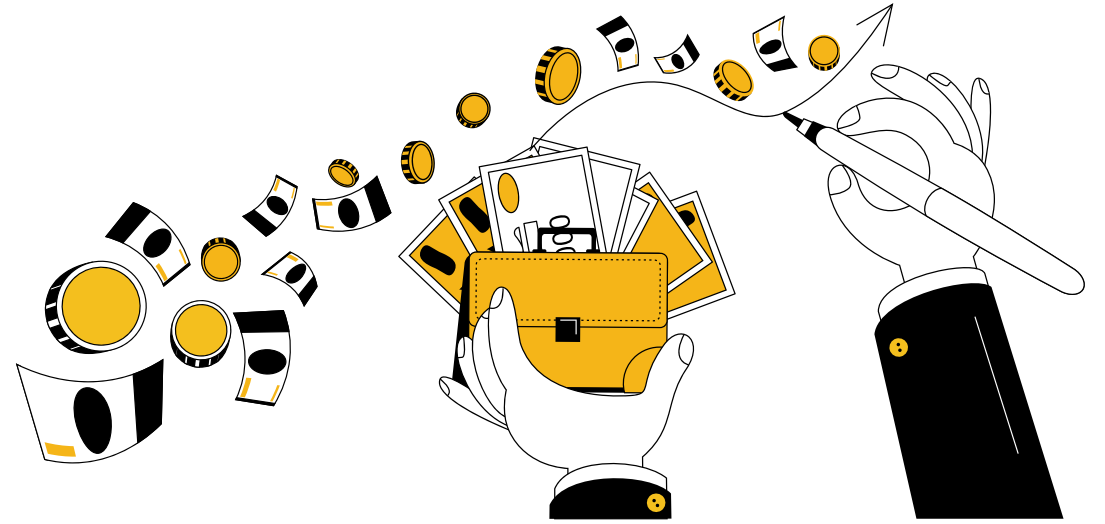
$$\text{장기요양보험료} = \text{건강보험료} \times \frac{\text{장기요양보험료율}(0.9948\%)}{\text{건강보험료율}(7.19\%)} = \text{건강보험료} \times 13.14\%$$

CHECK 2 보수 외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중에서 재산보험료 부담이 큰 사람은 재취업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덜 수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보험료가 많은 사람, 특히 직장 급여 외 소득이 많은 사람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라 한다.

소득평가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를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근로소득과 공적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 소득은 아직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할 때와 같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 지원 없이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방법(2026년 기준)

$$\text{건강보험료} = \{(\text{연간 '보수 외 소득'} - 2\text{천만 원}) \times \frac{1}{12}\} \times \text{소득평가율} \times \text{건강보험료율}(7.19\%)$$

$$\text{장기요양보험료} = \text{건강보험료} \times \frac{\text{장기요양보험료율}(0.9448\%)}{\text{건강보험료율}(7.19\%)} = \text{건강보험료} \times 13.14\%$$

*** 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의 100%
- 근로·공적 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 합계액의 50%

CHECK 3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야 하나?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달라진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따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수입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사용자가 신고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듬해 5월(성실신고 사용자 6월) 개인사업장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끝난 다음 정산한다. 그렇다고 개인사업자가 마음대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종업원보다 많은 금액을 버는 것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에 결손이 나서 사용자가 가져갈 수입이 없을 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 월액을 평균으로 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고 개인사업을 시작하려는 은퇴자라면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165

이자·배당·전월세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되나요?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금액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CHECK 1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재산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소득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부과된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 나머지 소득은 100%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에 부과된다. 주택과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금액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는 과세표준액을 100%로 재산가액으로 인정한다. 전월세 금액은 보증금에 월세금액의 40배를 합친 금액의 30%를 재산가액으로 본다.

CHECK 2 이자와 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나?

은퇴 후에 이자와 배당을 받아 노후 생활비

를 충당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때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생활하려는 은퇴자는 비과세 금융 상품이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CHECK 3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나?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모든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소득에는 부과하지 않는다.⁸⁾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및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법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의 100%
	근로, 공적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 합계액의 50%
재산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
	전월세 금액	{보증금+(월세 금액×40)}의 30%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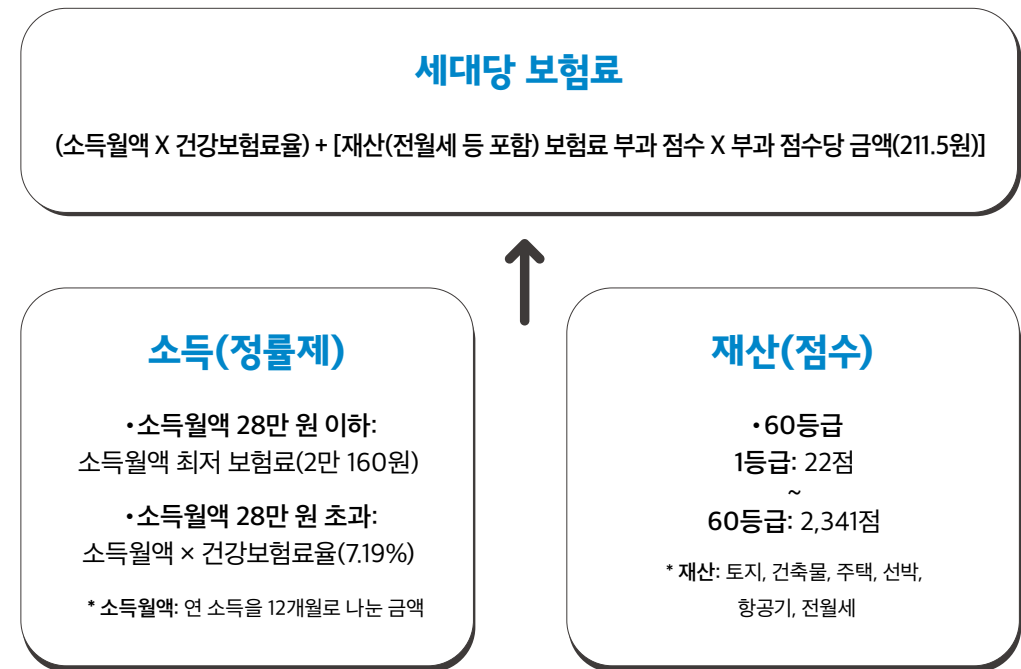
-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월 소득에는 건강보험료율(7.19%)을 곱하고, 재산에는 부과된 점수당 금액(211.5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CHECK 1 지역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하나?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은 소득월액 28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먼저 소득보험료부터 살펴보자.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인 세대는 최저 보험료(2만 160 원)가 부과된다. 소득월액이 28만 원보다 많은 세대는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7.19%)을 곱해서 소득보험료를 산출한다.

다음은 재산보험료를 산출할 차례다. 먼저 재산을 크기에 따라 60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일정한 점수를 부여한다. 재산 금액이 450만 원 이하이면 1등급으로 22점이 부여되고, 재산 금액이 77억 8,124만 원을 초과하면 60등급으로 2,341점이 부여된다. 부과 점수 1점당 211.5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60등급(2,341점)인 세대는 재산보험료로 49만 5,120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CHECK 2 최소 보험료와 최고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지역 건강보험료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 먼저 월별 하한 보험료는 2만 160원이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를 더하면 2만 2,800원이 된다. 재산이 없을 경우,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인 세대가 하한 보험료를 납부한다. 보험료 상한은 459만 1,740원이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보험료 상한은 519만 5,090원이 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건표

소득보험료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6,390만 원
보험료율	-	719%	719%	719%	719%	719%	719%	719%
소득보험료	2만 160원	7만 1,900원	21만 5,700원	35만 9,500원	71만 9,000원	215만 7,000원	359만 5,000원	459만 1,740원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	9,440원	2만 8,340원	4만 7,230원	9만 4,470원	28만 3,420원	47만 2,380원	60만 3,350원
예상 지역건보료	2만 2,800원	8만 1,340원	24만 4,040원	40만 6,730원	81만 3,470원	244만 0,420원	406만 7,380원	519만 5,090원

재산보험료

재산세 과표	3억 원	5억 원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	30억 원	50억 원	80억 원
재산 점수	681점	812점	1041점	1,241점	1,391점	1,571점	1,991점	2,341점
점수당 보험료	211.5원	211.5원	211.5원	211.5원	211.5원	211.5원	211.5원	211.5원
재산보험료	14만 4,030원	17만 1,730원	22만 0,170원	26만 2,470원	29만 4,190원	32만 2,260원	42만 1,090원	49만 5,120원
장기요양보험료	1만 8,920	2만 2,560원	2만 8,930원	3만 4,480원	3만 8,650원	4만 3,650원	5만 5,330원	6만 5,050원
예상 지역건보료	16만 2,950원	19만 4,290원	24만 9,100원	29만 6,950원	33만 2,840원	37만 5,910원	47만 6,420원	56만 0,170원

본 자료는 2026년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작성됨.

CHECK 3 지역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지금까지 지역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을 살펴봤다. 하지만 은퇴자 입장에서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궁금한 것은 자신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다. 다음 조건표를 보면 소득과 재산 금액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하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 재산: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천만원 넘지 않아야 합니다.
- ☑ 부양 요건: 직장인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과 그 배우자 등

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CHECK 1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가?

소득 요건부터 살펴보자.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소득을 말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CHECK 2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되기가 더욱 어렵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자등록을 했다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자격을 갖는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이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HECK 3 소득 자료 반영 시기는 언제인가?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까? 연금소득은 5대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지급 기관이 제공하는 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활용한다. 연금소득 이외 소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전년도 귀속 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 가입자 개인별로 소득의 합을 구한 다음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부부 소득을 합산하지는 않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CHECK 4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넘는가?

소득 요건을 갖췄으면 다음은 재산 요건을 확인할 차례다. 피부양자 자격 심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배우자 또는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이들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 할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CHECK 5 부양 요건에 부합하는가?

마지막으로 부양 요건을 알아보자.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여야 한다. 이 밖에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⁶⁾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소득 요건

-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기타소득) 합산 연간 2천만 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등재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부양 요건

- 직장인 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인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인 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등
-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재산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 이자·배당·근로·사업·기타소득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로 파악합니다.
-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 지급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로 책정합니다.
-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자료를 반영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피부양자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도 소득과 재산 자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어떻게 파악하는 걸까?

CHECK 1 소득월액은 어떻게 파악하나?

보수 외 소득월액을 파악하는 방법은 소득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르다. 먼저 연금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 자료를 활용한다.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수 외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는 전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활용한다. 매년 11월과 12월에 보수 외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는 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활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를 11월에 건강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2025년 귀속분 소득을 예로 들어보자. 건강보험가입자는 2025년 귀속분 소득을 2026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해당 소득 자료는 2026년 11월에 건강보험에 반영된다. 따라서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2024년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2025년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CHECK 2 연금소득은 어떻게 파악하나?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로 파악한다. 하지만 연금소득은 5대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지급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로 파악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대 공적 연금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기초해 연금소득을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불일치 때문에 현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를 반영한다.

CHECK 3 재산 관련 자료는 어떻게 파악하나?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도 재산 자료가 필요하다. 재산 관련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자료를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해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과 재산 반영 기준

구분	자료	연계 기관
연금 외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	1월~10월: 전전년도 귀속분 소득 11월~12월: 전년도 귀속분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전년도 귀속 5대 공적 연금소득	5대 공적 연금 기관
재산	1월~10월: 전년도 재산세 과표 11월~12월: 해당 연도 재산세 과표	지방자치단체

임의계속가입으로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나요?

-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장 3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려면 퇴직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통산 1년 이상 직장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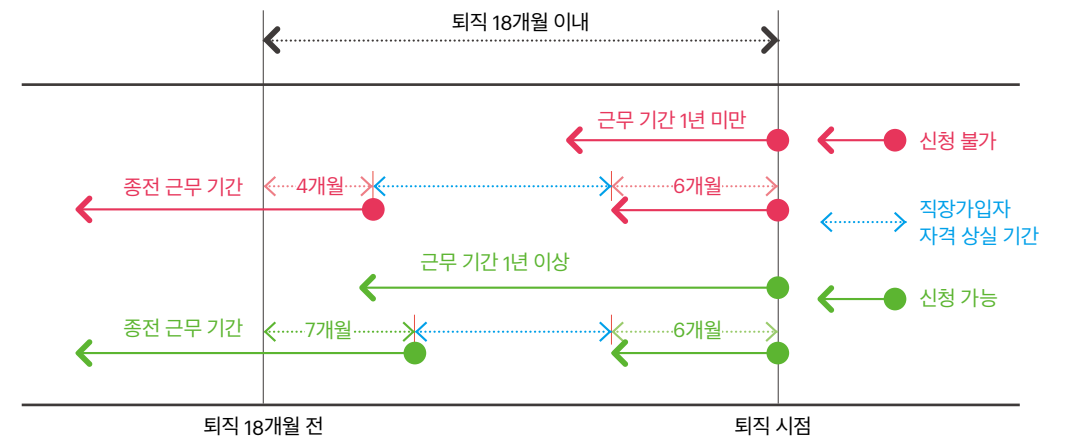
CHECK 1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니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CHECK 2 퇴직자는 누구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 가입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직장을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재가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 가입 자격이 1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가입자가 부담한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지역 건강보험료가 많은 사람에게 임의계속가입 안내문을 발송하

임의계속가입 신청 자격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중전 및 현 직장 포함)이 1년 미만이면 신청이 불가능함.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의 평균 × 건강보험료율(7.19%) × 50%
+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고 있다. 다만 세대 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직 후 최초로 고지를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하다. 가입 신청은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해도 되고,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 우편, 유선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CHECK 3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되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한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2026년 7.19%)을 곱해서 나온 금액의 50%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이렇게 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가입자가 실제 납부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보수 외 소

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CHECK 4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탈퇴할 수 있나?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 동안 유지된다. 가입기간이 종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최초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임의계속가입기간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이때는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탈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탈퇴 신청을 하면 다음 날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15



소득·재산 변동 시 건강보험료 조정되나요?

-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반영해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이러한 변동 사항을 즉시 반영해 달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귀속분 소득과 당해 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반영해서 조정한다. 그런데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CHECK 1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이 감소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다.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이미 부과한 보험료와 재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매년 11월에 정산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연말정산제도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조정 신청을 한 해에 다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그다음 달 말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과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CHECK 2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나?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재산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해당 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산정한다. 그런데 재산을 매각하거나 상속 또는 수용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보험공단은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 자료를 수신해서 이를 일괄 조정 처리하고 있다. 지역가입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 원인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달부터) 적용한다.

CHECK 3 전월세에 부과된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도 조정할 수 있나?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전월세 금액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전월세 계약기간이 지났거나 변경되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 전월세 내역과 실제 계약 내역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도 건강보험공단에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월세 계약기간이 지났거나, 주소가 변경됐는데도 전월세 보증금 신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에 나온 신고 금액으로 전월세금을 조정한다.⁸⁵

5

PART

실업급여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하는데, 정년 퇴직이나 계약 만료도 이에 해당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구직신청 및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업 급여에 관심을 갖게 된다.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CHECK 1 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는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직(離職)은 직장을 떠난다는 의미로, 흔히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이직(移職)과는 다르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보수가 지급된 날을 전부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포함된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180일이 충족된다.

CHECK 2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는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한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돼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본인 귀책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자발적인 퇴사라 할지라도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한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돼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됐거나,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 가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해야 해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통근 시간 3시간 이상)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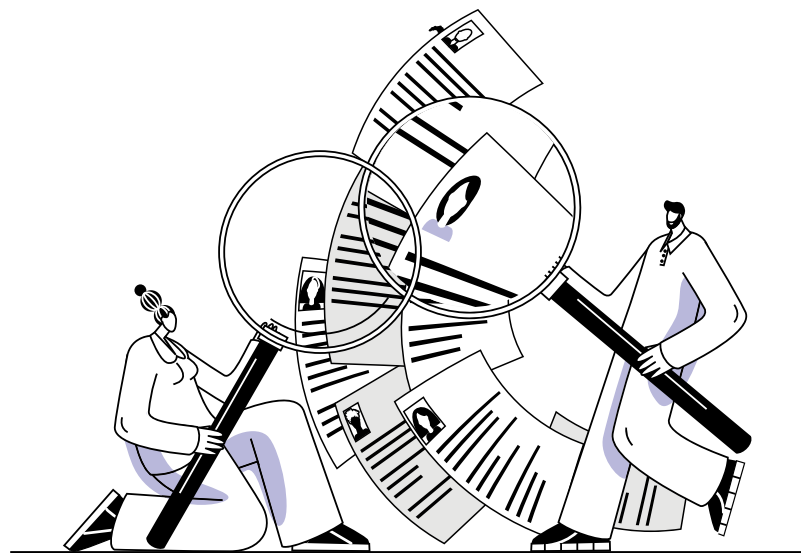
CHECK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내일 당장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취업의 범위에는 직장에서 근로하는 것만 아니라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만약 이직 사유가 근로 능력 자체의 부족 때문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가해지거나, 구직급여 지급 연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CHECK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기적으로 구직 신청을 하거나 취업 알선 기관에 등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지정된 출석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 제출을 통해 자신의 구직 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61



이직(離職) 사유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조건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
계약 만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 종료 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없다.
정년퇴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정년을 정해 놓았고 그에 해당되어 정년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
간병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과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 질병 등으로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경우, 본인 외에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등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
육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해야 한다. 이때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휴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 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한다. 다만,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사용 중이거나 현재 보육 중인 경우, 직장보육시설 활용 등이 가능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없다.

구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근로자격상실신고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및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합니다.

CHECK 1 이직확인서, 근로자격상실신고서는 처리했는가?

먼저 이직(離職)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처리되어야 실업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직확인서에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이직 사유, 이직 일자, 피보험단위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처리 사실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격상실신고서는 이직으로 4대 보험 자격이 상실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인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내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CHECK 2 구직 신청을 하고, 이력서를 등록했는가?

실업 상태를 인정 받았으면, 다음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할 차례다. <고용24>에서는 일자리 검색, 이력서 등록, 구직 신청,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하다. 구직급여를 수령하려면 <고용24>에 구직 신청을 하는 것이 필수다. 정부는 실업자가 이곳에 구직 신청을 해야 구직의

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구직 신청을 한 다음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력서를 간단히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CHECK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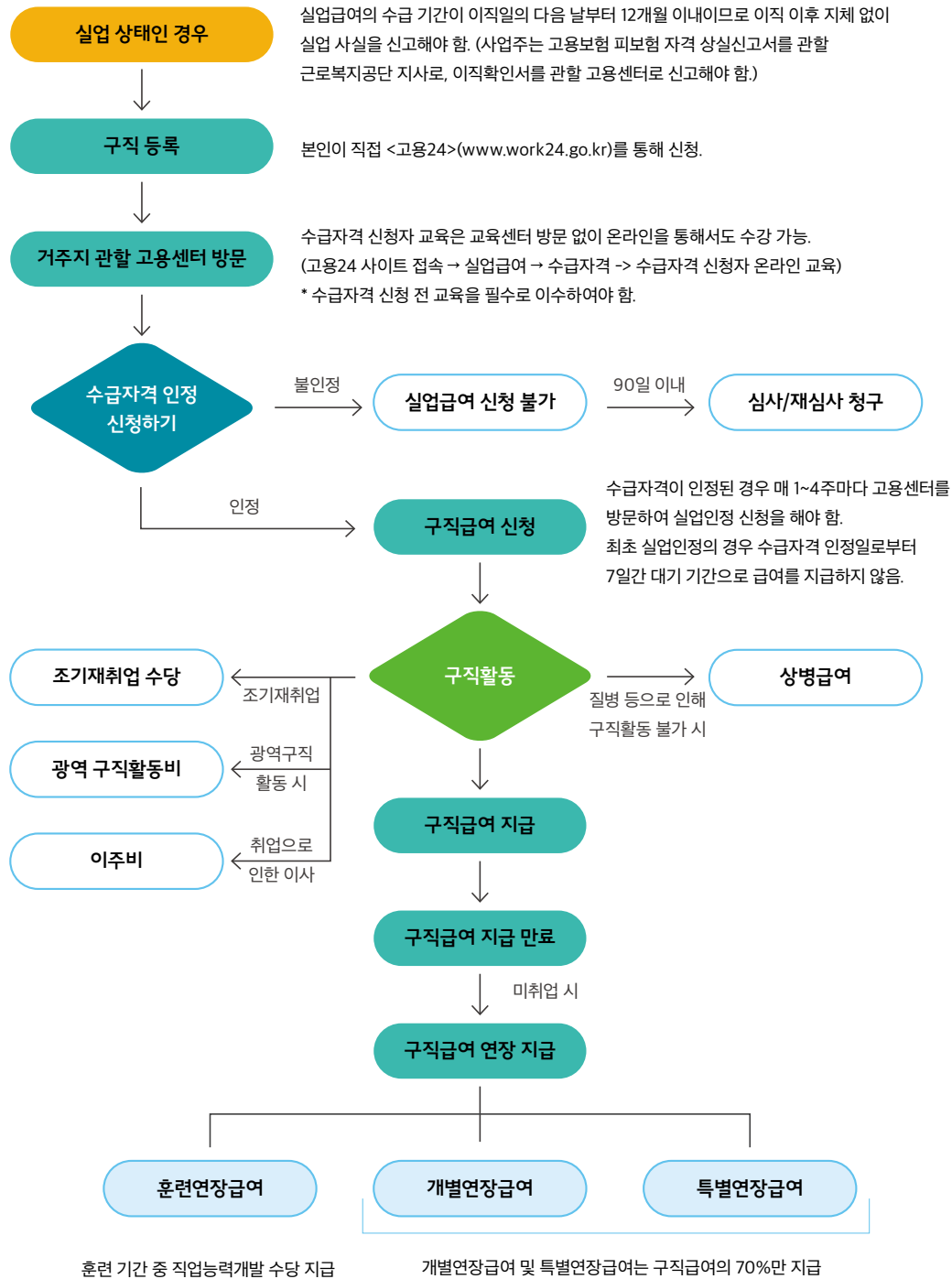
구직 신청을 한 다음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하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다음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차례다. 신청서는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고용센터를 방문한 날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된다. 고용센터는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한다.

CHECK 4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는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실업급여 지급 절차



거쳐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자격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후가 최초(1차) 실업인정일이 된다. 4월 3일에 수급자격 신청을 했으면, 1차 실업인정일은 4월 17일이 된다. 이 기간을 1차 실업인정 대상 기간이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은 1차 실업인정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전교육을 이

수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1차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이후에도 고용센터를 방문해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2~4차는 4주에 한 번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고, 5차 이후부터는 4주 내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중 구직활동 1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재취업 활동을 입증할 자료

재취업 활동

- 구인 업체 방문 또는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 과정을 수강한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직업 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입증 자료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면접 또는 서류 접수 담당자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본과 입사지원서 접수 날짜가 적힌 이메일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와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해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채용시험, 면접 참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 계획서에 따라 점포 물색,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 활동, 허가 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를 한 자료를 제출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 지급액은 1일 기준 상한(6만 8,100원)과 하한(6만 6,048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합니다.

CHECK 1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평균임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를 해당 기간 근무 일수로 나눠서 산출한다.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 상한액은 1일 6만 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나온 금액(6만 6,048원)이다. 이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에 소정의 구직급여 일수를 곱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결정된다.

CHECK 2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 지급 일수는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에서 산정된다.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인 자는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구직급여 지급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를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을까?

안 된다. 차수별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당 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구직급여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까지만 수급이 가능하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직하자마자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다.

CHECK 3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김미래 씨가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55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해 보자.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 20만 원이라면 김미래 씨는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먼저 하루에 수령할 수 있는 구직급여부터 계산해 보자. 먼저 평균임금(20만 원)의 60%를 계산하면 12만 원이 나온다. 하지만 상한액이 6만 8,100원이므로 김미래 씨는 구직급여로 하루에 6만 8,100원을 수령하게 된다. 퇴직 당시 김미래 씨는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김미래 씨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한다면 총 수령 금액은 1,838만원이 된다.

구직급여를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을까? 안 된다. 차수별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당 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첫 번째 구직급여는 1차 실업인정일(구직급여 신청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후)에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의 구직 활동은 1차 실업인정 때 받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차 실업급여부터는 구직 활동을 지속하면서 실업인증을 신청하면 4주 단위로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재취업 안 되면 구직급여 수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의 70%와 최저 구직급여액 중 큰 금액을 최대 60일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도 구직급여 지급액의 70%와 최저 구직급여액 중 큰 금액을 최대 60일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CHECK 1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한가?

만약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다.

먼저 훈련연장급여부터 살펴보자.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훈련연장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훈련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연장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다면 재취업이 쉬울 것이라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된 경우여야 한다. 셋째,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넷째, 고용센터의 직업 소개 또는 집단 및 심층 상담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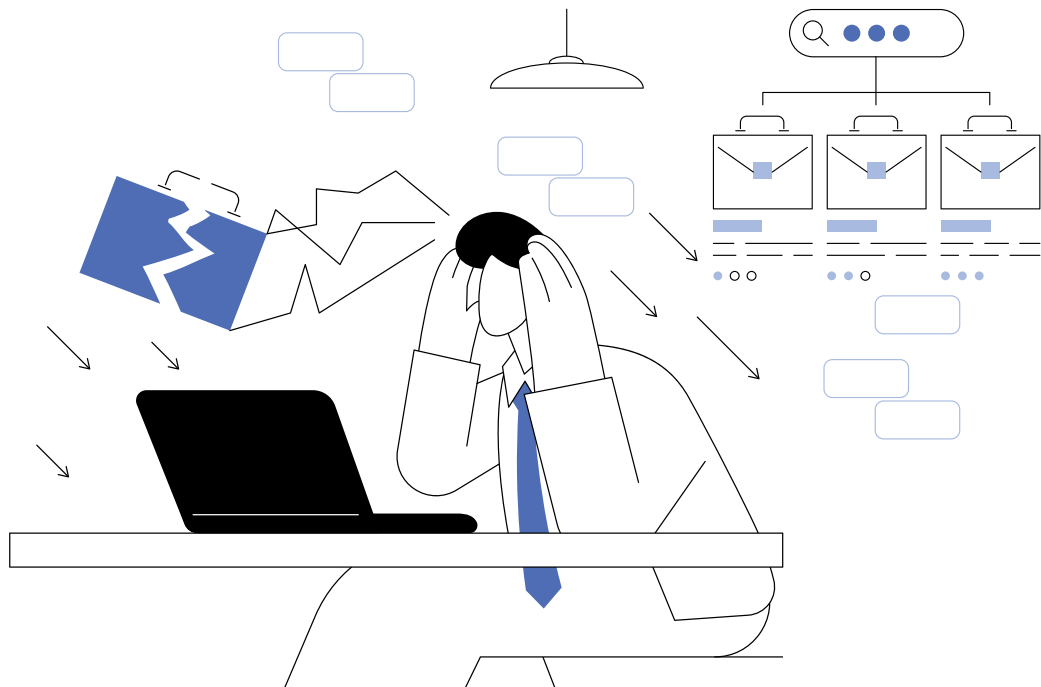
CHECK 2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가?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 소개에 3회 이상 참여했으나 취업이 안 된 사람 중에서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④ 소득이 없는 배우자, ⑤ 「고등교육법」에 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지급된다. 개별연장급여 수급자격을 갖추면 구직급여 지급액의 70%와 최저 구직급여액 중 큰 금액을 최대 60일 동안 수령할 수 있다.

CHECK 3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가?

실업의 급증과 같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외환 위기 당시 한 차례 시행된 바가 있다. 여기서 대통령이 정한 사유란 연속하여 3개월 동안 실업률이 6%를 초과하는 경우, 연속하여 3개월 동안 실업급여 신청자가 피보험자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연속하여 3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피보험자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특별연장급여 시행 기간 중 구직급여가 종료되고 재취업이 되지 않은 수급자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정부가 고지한 기간 동안 특별연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별연장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70%와 최저 구직급여액 중 큰 금액을 최대 60일 동안 수령할 수 있다.



CHECK 4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 활동이 어려운가?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병급여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기간이 7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대신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동일하다.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진료 내역, 치료 기간, 의사 소견서, 재취업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⁵⁾

연장급여와 상병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

종류		지급 대상과 지급액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액의 100%(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상병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급여액의 100%

조기에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는 못 받나요?

- 구직급여 지급 일수가 남아있는데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구직급여 중 50%를 일시에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급 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재취업하고 해당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CHECK 1 재취업 당시 구직급여 일수가 절반 이상 남았는가?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구직급여 지급 일수가 남아 있는데 재취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구직급여가 중단된다면 조기에 재취업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 이때는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인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급 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취업하고 해당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남은 구직급여 중 50%를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CHECK 2 일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

재취업한 다음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용 근로자로 재취업한 날로부터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된 경우,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급 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을 것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할 것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일용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로부터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되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CHECK 3 이직한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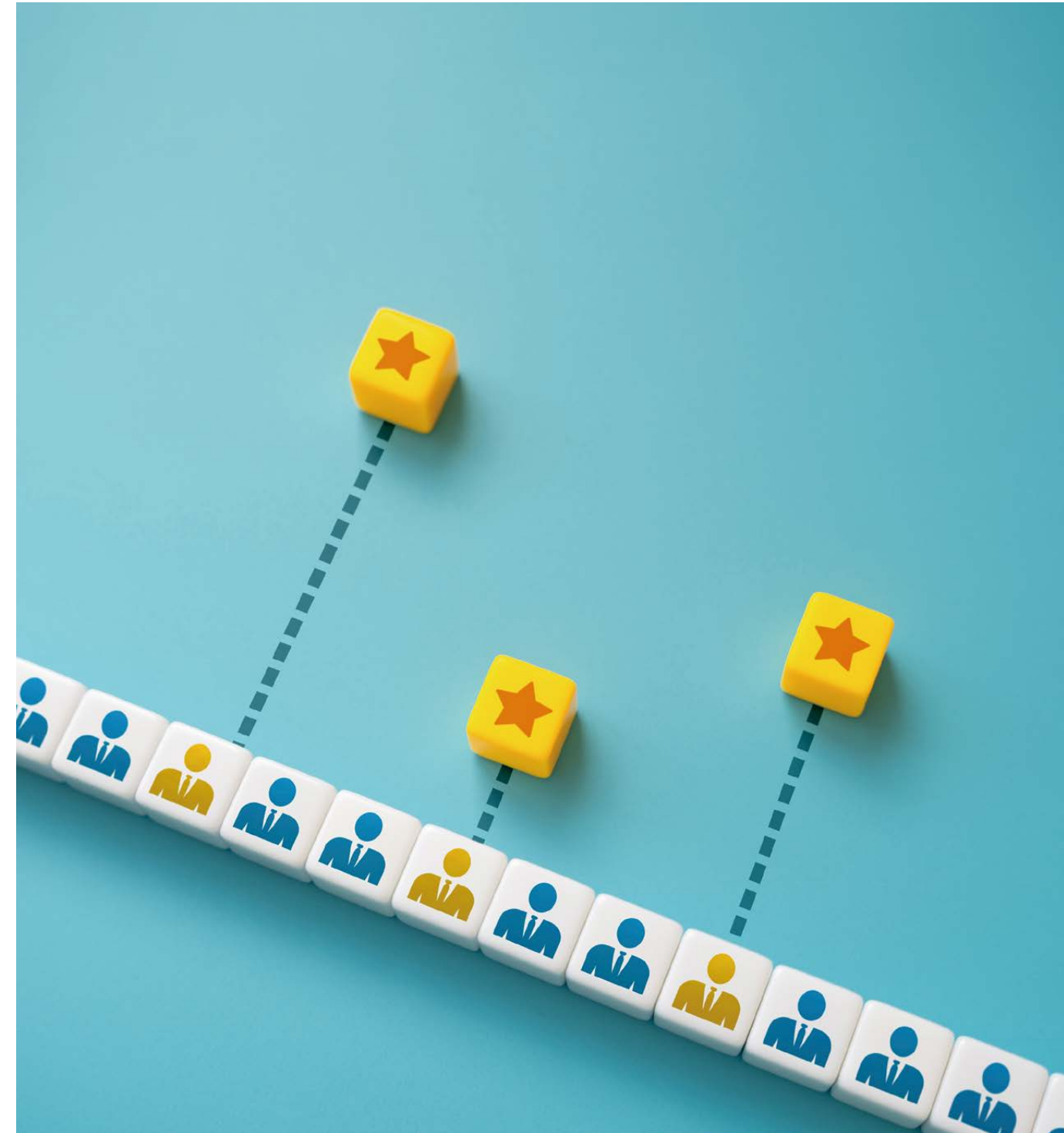
직전에 퇴직한 직장에 재고용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안 된다. 이처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직한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직한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외에도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CHECK 4 언제 받을 수 있나?

그렇다면 재취업을 하자마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면 된다. 단, 이직당시 65세 이상이면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취업 및 사업 운영 기간도 6개월로 단축된다. 근로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빙,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8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4.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액(2026년 574만 원) 이상의 직장에 취업한 경우
5.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제외)
6. 재취업한 날,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재취업 활동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 수당(1일 10,32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의 소개로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구직 활동을 하면 광역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숙박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으려고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CHECK 1 직업훈련이 필요한가?

구직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 동안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인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2026년에는 훈련 받은 1일당 10,320원을 받을 수 있다. 휴일, 질병, 부상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고용센터의 지시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해서 교통비 또는 식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직업훈련을 받고 실업인정일에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면 구직급여의 수령일에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분	종류	
구직급여	구직급여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CHECK 2 집에서 먼 곳에서 구직하는가?

구직급여 수급자가 거주지 인근에는 일자리가 없어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 이때 고용센터의 소개로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구직 활동을 하면 취업촉진수당의 하나인 광역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숙박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으려면 주거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회사를 대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고, 광역구직 활동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CHECK 3 구직 활동을 하려고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가?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으려고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주비 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게 된 경우로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장이 주거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둘째, 해당 수급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했다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해야 한다. 셋째, 취업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취업해야 한다. 이주비로는 수급자격자와 그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이 이주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실비로 지급된다. ⁶⁾

취업촉진수당 종류와 지급액

종류	지급 대상	지급액
직업능력개발 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1일 10,320원)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조기재취업 수당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급 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고 재취업 후 해당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

구직급여 받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실직자가 실업 크레딧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중 25%만 납입하고, 나머지 75%는 국가가 부담해줍니다.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70만 원이 상한입니다.
-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CHECK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실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덜고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실업 크레딧 제도가 있다. 실직자가 실업 크레딧 신청을 하면 본인 은 보험료 중 25%만 납입하고, 나머지 75%는 국가가 부담한다. 한 사람이 생애 통산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실직자는 누구나 실업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실업 크레딧 신청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첫째,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여야 한다. 둘째, 과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1개월 이상 있어야 한다. 셋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1,680만 원 이하여야 한다.

CHECK 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실업 크레딧 신청 요건

인적 사항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이자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납부 이력

1개월 이상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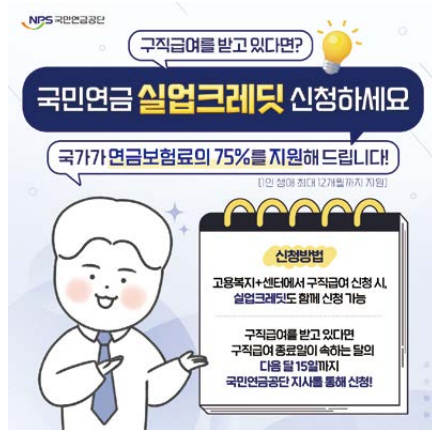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1,680만 원 이하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 원이고, 상한은 659만 원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최소 3만 8,950원에서 최고 62만 6,050원 사이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 크레딧 신청을 하면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김미래 씨의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평균소득의 50%는 100만 원으로 인정소득 상한인 70만 원보다 많다. 따라서 70만 원이 인정소득이 된다. 여기에 보험료를 9.5%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6만 6,500원이 된다. 이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4만 9,875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1만 6,625원을 김미래 씨가 납부하면 된다.

CHECK 3 어떻게 신청하나?

실업 크레딧 신청은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6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안내 이미지



SURVEY

50대 이상 은퇴자 400명이 말하는 '은퇴 후 후회되는 것'들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일까?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에서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50대 이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퇴직 전 미리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되는 것을 물었다. 구체적으로 재정 관리, 건강, 일, 인간관계, 취미·여가 등 은퇴 생활의 근간이 되는 5가지 항목을 선택지로 구성했으며, 그중 재정 관리는 그 특성에 따라 연금과 연금 외 자산으로 나누어 설문했다.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것 1위, 재정적 준비

퇴직 전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는?

비중(%)



개인연금 관리와 투자에 좀 더 신경 쓸걸

연금 관련 후회되는 한 가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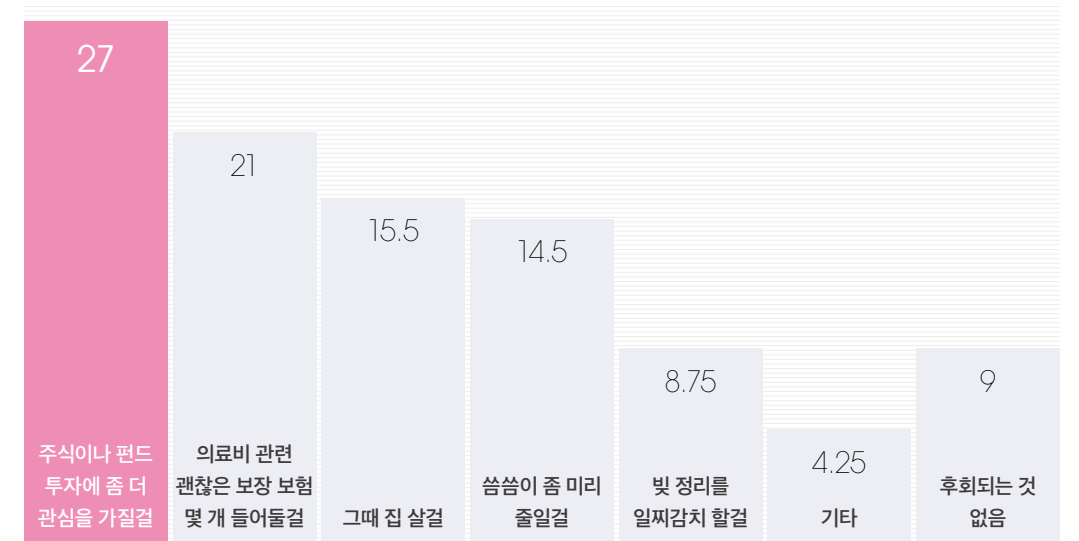
비중(%)



투자로 노후 자산 좀 불려놨어야 했는데

연금 외 자산 관련 후회되는 한 가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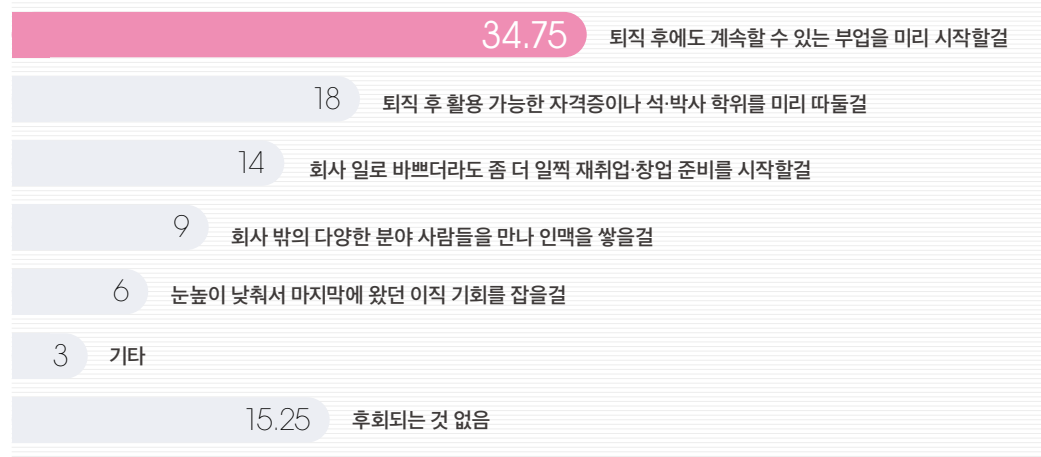
비중(%)



은퇴 후 일이 있으면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었겠구나

일자리 관련 후회되는 한 가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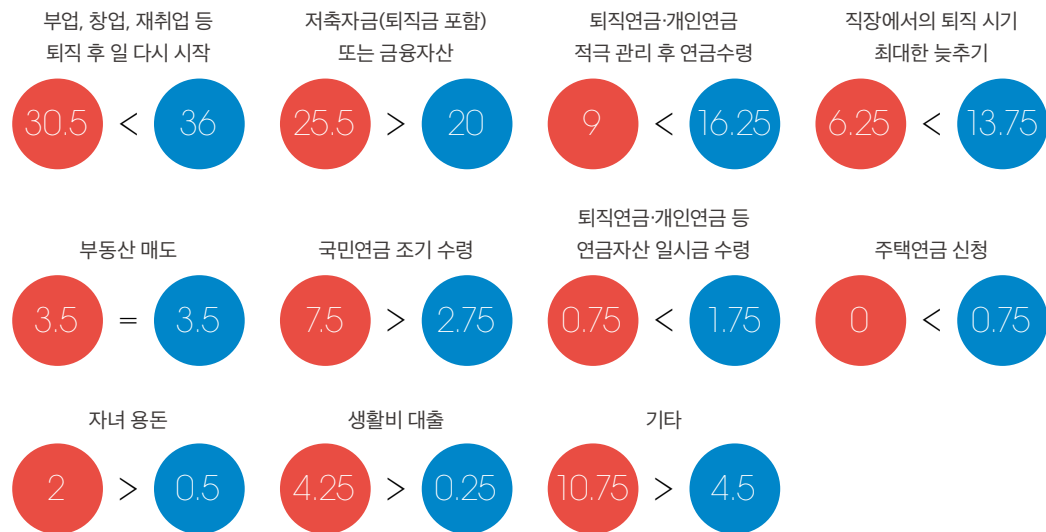
비중(%)



소득 공백기에 단비 같은 은퇴 후 일자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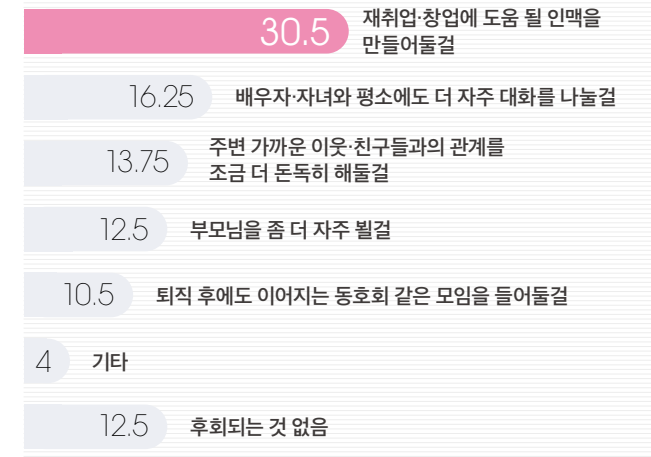
소득 공백기 동안 생활 자금을 ● 실제로 어떻게 마련했으며 ●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돈 되는 인맥 좀 미리 쌓아들걸

인간관계 관련 후회되는 한 가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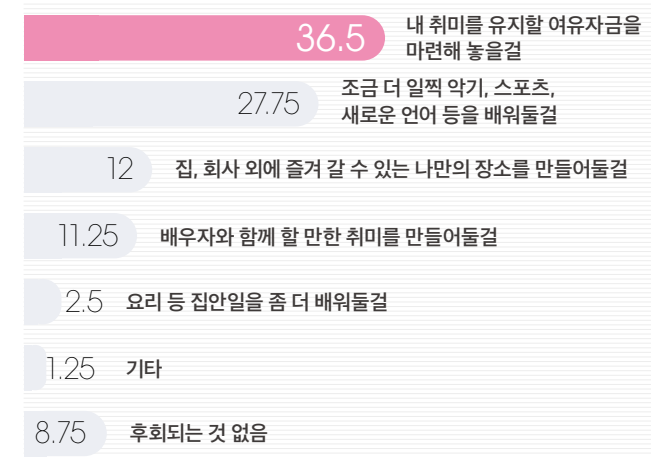
비중(%)



취미 생활 할 돈도 좀 따로 모아들걸

취미 생활 관련 후회되는 한 가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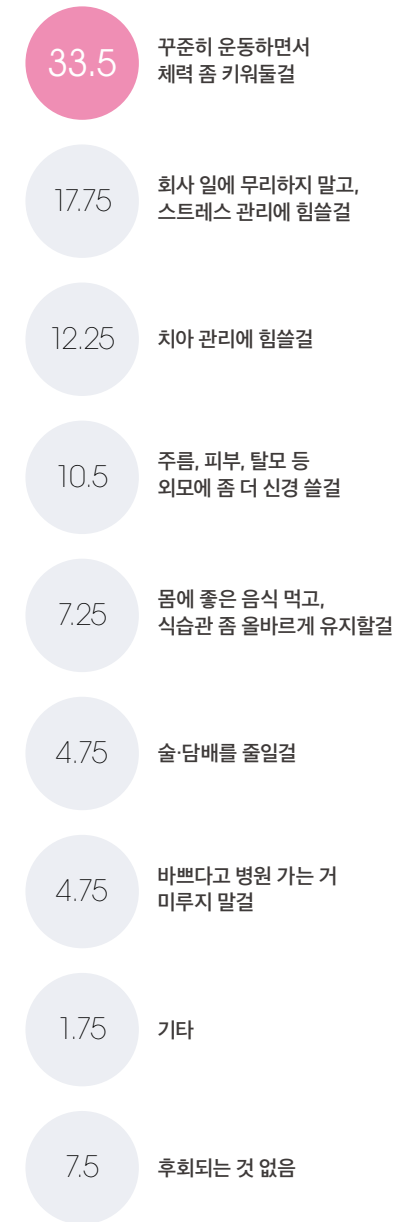
비중(%)



체력도 차곡차곡 노후준비 좀 해들걸

건강 관련 후회되는 한 가지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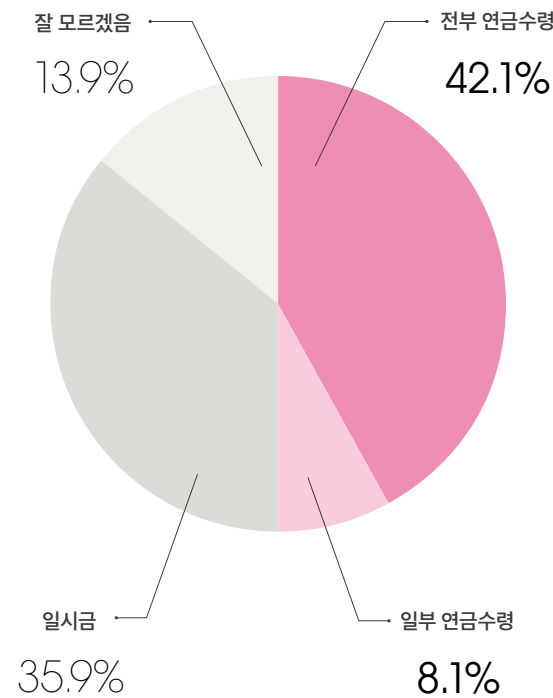
50대 직장인 퇴직급여는 언제, 어떻게 수령하길 원할까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비중이 높지만 연금수령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비중(2017년 0.5만 좌 → 2023년 5.5만 좌, 연평균 50.5% 증가)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들은 퇴직급여를 어떻게 수령하길 희망할까? 50대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50대 직장인 절반, 연금수령 희망해

연금계좌의 자금을 어떻게 수령할 계획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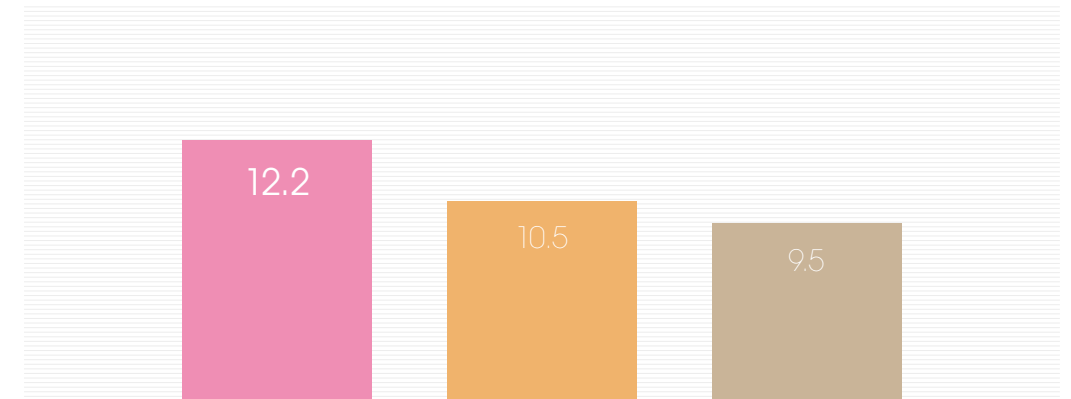
비중(%)



연금수령 희망자의 자산 수준은 평균 10억 ~12억 원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보유한 자산은 어느 정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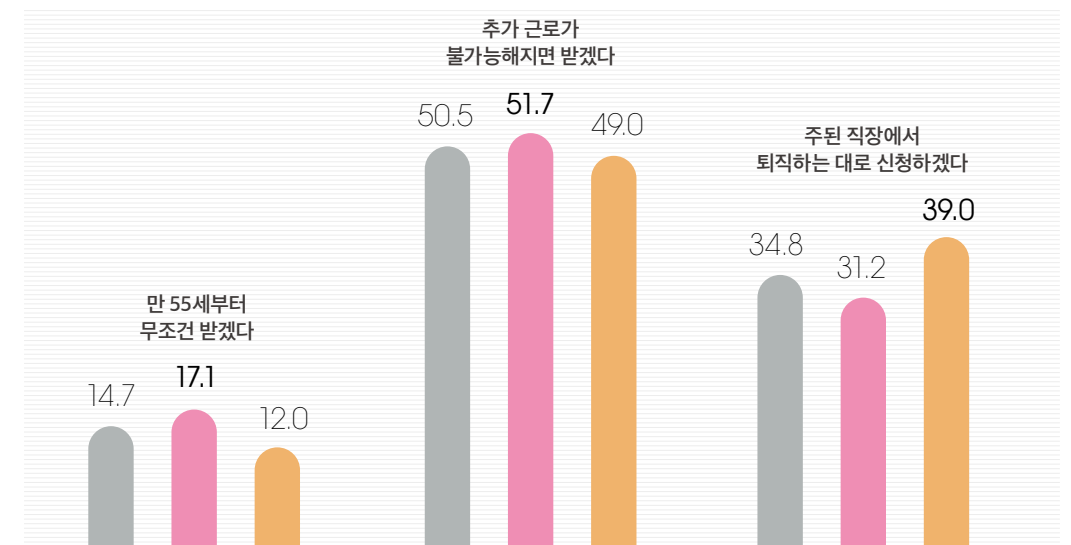
금액(억 원)



최대한 일하다가 연금 받겠다

연금 개시는 언제 할 계획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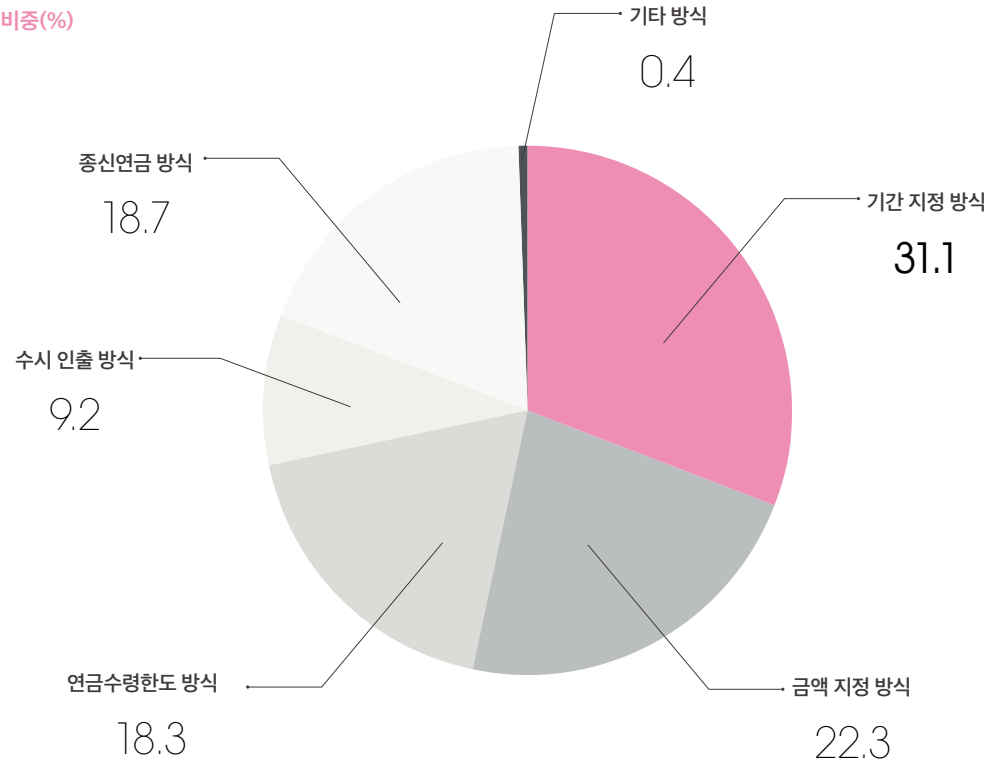
비중(%)



연금수령 방식은 '기간 지정'이 우세

연금계좌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 계획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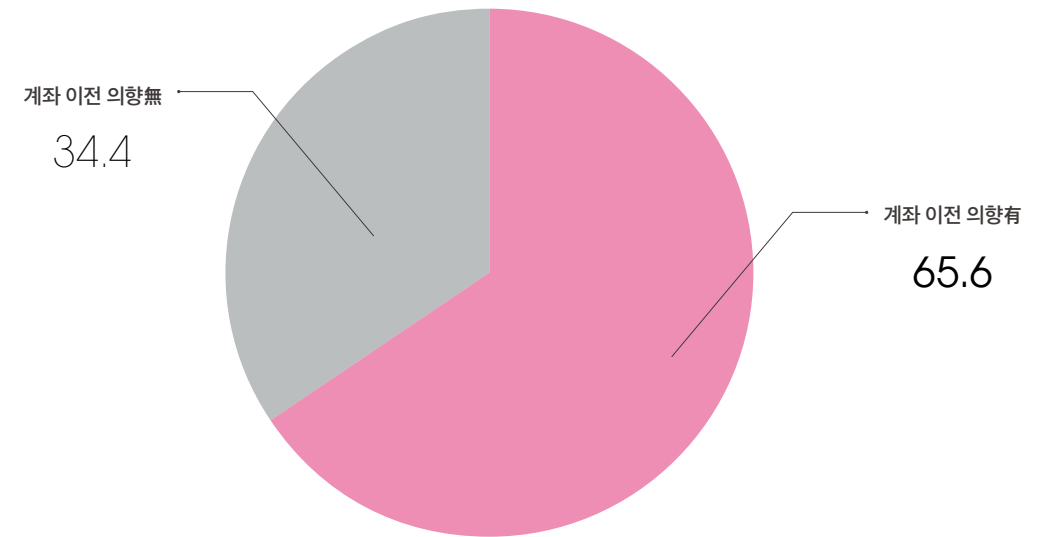
비중(%)



응답자 3명 중 2명, 더 나은 금융회사로 연금계좌 옮길 의향 있어

연금수령에 앞서 다른 금융회사로 연금계좌를 이전할 의향이 있는가?

비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금수령 방식

종류	기간 지정 방식	금액 지정 방식	수시 인출 방식	연금수령한도 방식	종신연금 방식
설명	가입자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정기형)이며, 기간을 1개로 설정한 정기형과 기간을 2개 이상으로 나누는 구간형 등이 있음	일정한 주기에 맞춰 가입자가 지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정액형)으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매년 수령할 금액을 증액하는 체증형, 반대로 수령할 금액을 감액하는 체감형이 있음	가입자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인출하는 방식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만큼 인출하는 방식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수령함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며, 연금 개시 이후 중도에 변경 및 해지 불가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 개시일(개시 이후는 매년 1월 1일)}}{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퇴직한 다음 날 궁금한 50가지

퇴직을 앞둔 직장인의 노후준비 길라잡이

지은이	김동엽 오은미 이동근 정혜원
편집	몽스미디어
디자인	엠비엔트
사진·일러스트	shutterstock
퍼넌곳	미래에셋투자자산연금센터(investpension.miraeasset.com)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타워1 13층
발행일	초판 1쇄 발행 2024년 12월26일 개정 5쇄 발행 2026년 5월29일

•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당신의 연금, 투자로 키우고, 보증으로 약속합니다

글로벌
투자수익성

수령액
보증안정성



보증형 실적배당 시작
퇴직연금 콜센터
02-2287-4070

* 이 광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미래에셋생명 개인형IRP 보증형실적배당보험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더 길게, 투자 손실에는 원금을 보장하며 최소 20년간 연금 수령



[미래에셋생명 개인형IRP 보증형실적배당보험] ■ 미래에셋생명 개인형IRP 보증형실적배당보험은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셋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적배당형상품은 특별계정의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외형 특별계정의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펀드의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특별계정은 운용 수수료 등 보수와 재간접투자 시 기초펀드의 수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 연금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자의 임의해지 시 별도의 보증 없이 해지 시점의 특별계정적립금을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증형 연금은 연금액 보증기능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증비용(연0.123%)은 매월 가입자적립금에서 차감되며, 차감 시 가입자 운용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6-04272호 (2026.05.14~2027.05.13)

MIRAE ASSET
미래에셋생명

비과세로 투자하고
[관련세법충족시]

잘나가는 글로벌펀드를
수시로 추가하고 바꿀 수도 있고

[미래에셋생명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매년 12회 범위 내 투입펀드 또는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가능, 펀드 변경 시 수수료 없음]

글로벌MVP60펀드 누적수익률

125.5%

[2014.04.01~2026.02.20, 생명보험협회 공시]
1년 수익률 15.5%, 5년 수익률 32.9%, 10년 수익률 113.6%



연금 투자하는 좋은 방법, 미래에셋생명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 잘 나가는 글로벌펀드 수시 추가·교체

(매년 12회 범위 내 투입펀드 또는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가능, 펀드 변경 시 수수료 없음)

● 비과세 혜택, 중도인출 가능

(중도인출 가능기간 및 횟수제한,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수수료 공제, 단, 보험연도 연 4회 면제, 중도인출 전후 환급금 동일하지 않음)

● 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에서 영상광고도 확인하세요 life.miraeasset.com

■ 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인당 “1억원까지”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의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별계정은 운용 수수료 등 보수와 재간접투자 시 기초펀드의 수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 해약형 특별계정의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셋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6-01718호 (2026.03.09~2027.03.08)

MIRAE ASSET
미래에셋생명